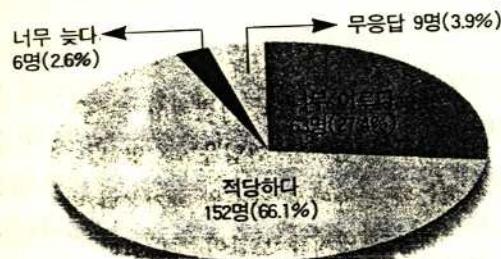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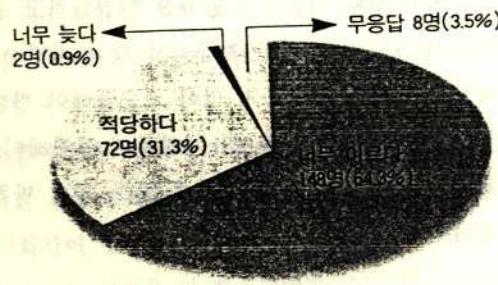
제7장 일과

1. 기상시간은 몇시였으며,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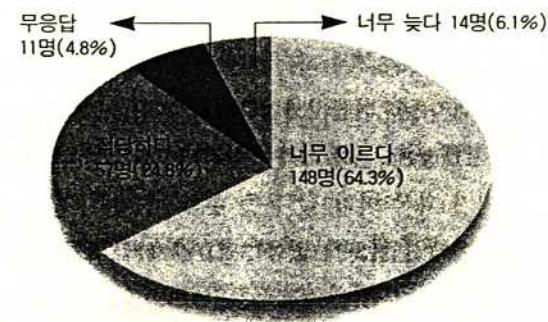
- 기상시간—5시(10명)/5시 30분(4명)/6시(122명)/6시 30분(48명)/6시 50분(1명)/7시(23명)/8시(1명)/9시(1명)/9시 30분(1명)

2. 저녁식사는 몇시에 했으며,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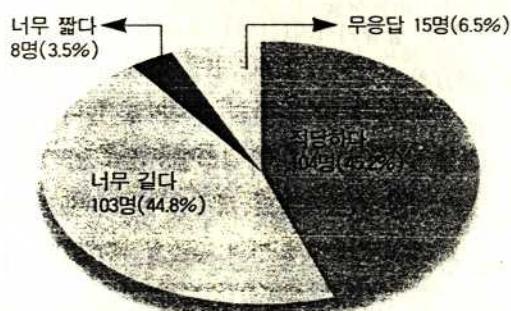
- 저녁식사 시간—4시(31명)/4시 30분(5명)/5시(101명)/5시 30분(23명)/5시 40분(3명)/6시(42명)/7시(4명)/8시(3명)

3. 취침시간은 몇시였으며,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취침시간—7시(8명)/7시 30분(2명)/8시(131명)/8시 30분(4명)/9시(56명)/9시 30분(2명)/10시(7명)

4. 수면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며, 그 수면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면시간—6시간(3명)/7시간(2명)/7시간 30분/8시간(25명)/9시간(46명)/10시간(102명)/10시간 30분(4명)/11시간(5명)/11시간 30분(1명)/12시간(6명)/14시간(1명)

5.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써주십시오.

■ 지루한 시간

오후시간(44명)/저녁식사 후 취침시까지(19명)/휴일(15명)/잠자는 시간(15명)/온종일(11명)/방에 갇혀 있는 시간(8명)/작업시간(5명)/한자 교육시간(4명)/비가 와서 여러 날 운동 못할 때(3명)/점검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3명)/폐방시간(3명)/없음(3명)/잠자기 직전(3명)/점검 시간(2명)/오전(2명)/면회 없는 날(2명)/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을 경우(2명)/교정간부들의 시찰 시간/정자세로 독서해야 할 때/면회 기다리는 시간/출소 날짜 기다리는 시간/출역이 없는 시간/입방시간/식사 전후/일과시간과 수면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자유롭게 낮잠을 잘 시간이 없다/여가시간/추운 밤이 너무 길었음

■ 고통스러운 시간

점검시간(23명)/저녁식사 후부터 잠자기 전까지(18명)/아침 기상시간(11명)/취침 후부터 잠들기까지(11명)/더위와 추위(7명)/없음(6명)/순시(5)/전부(5명)/취향과 맞지 않는 방송을 억지로 들어야 할 때(4명)/폐방시간(4명)/검신 받을 때(3명)/휴일(3명)/잠이 안 오는데 자라고 할 때(3명)/정별방에서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을 때/새벽(2명)/오후시간(2명)/아플 때(2명)/옆방에서 먼저 출소할 때/입방 후(1명)/고문(1명)/면회 없는 명절 때(1명)/화장실 가는 시간(1명)/점심 먹고 난 뒤 바로 운동하는 시간(1명)/수면중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1명)/신문에 실린 투쟁소식 등을 읽을 때(1명)/신병들의 영창 견학시(1명)/운동시간이 짧다(1명)/함께 있는 전과자들의 말(1명)/일요일 사방생활(1명)/조직폭력배나 기타 깡패들의 폭언과 과격한 행동(1명)/피부병(1명)/수면시간(1명)/정신교육시간(1명)/굴비 엉듯이 묶을 때

(1명)/개도 방송시간(1명)/오전 10시(1명)/저녁식사 후(1명)/가족생각 날 때(1명)/운동시간이 짧을 때(1명)/오후 6~8시(1명)/고통과 아픔을 호소했으나 묵살당할 때(1명)/설거지 시간(1명)/고위간부 순회 검열시 단 5초를 위해 2주간 닦달당할 때(1명)

6. 교도(구치)소의 일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운동시간 및 운동시설 부족(25명)

운동시간 부족/정규시간대로 행해지지 않음/운동시설 부족

■ 일상이 단조롭고 지루하다(22명)

단순한 수용행정으로 먹고 자는 일밖에 없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먹고 자는 동물적 삶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운동시간 이외에는 움직일 기회가 없다/틀에 박힌 생활이다/교정교화가 목적인 일과인지 단순히 수감과 날짜 보내기가 목적인 일과인지 모르겠다/자유시간에 라디오라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운동시간과 독서 외의 활동시간이 필요하다/일요일은 폐방하여 감방 밖으로 전혀 나갈 수 없어 제일 두렵다/사색 등의 시간이 전혀 없고 무료하고 명해진다

■ 교도관 위주의 행정 편의적인 일과(5명)

■ 정상적인 생활리듬이 필요하다(4명)

기상, 취침, 식사 등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일과 자체가 실생활과 맞지 않는다

■ 죄수는 인격이 있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3명)

의무와 관습의 틀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온갖 규제 속에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함이 있었다

■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3명)

연휴가 많은 휴일에 4일씩이나 방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특히 여름 무더위에 좁은 거실에 11명에서 21명이 생활하면

서 숨이 막히고 잠을 잘 수 없었다

■ 자유시간이 필요하다(6명)

독서와 음악감상, 운동시간 등 개인적 활용시간이 많았으면 한다/신문구독의 자유와 사적 시간이 필요/우량수에게는 일요일 등 휴일에 운동 및 산책 시간을 주었으면/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사색 등의 시간이 전혀 없고 무료하고 명해진다

■ 정좌의 일상(3명)

몇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좌세로 지냈는데 특히 점호시 정좌의 폐지가 필요하다

■ 식사시간과 식사의 개선(5명)

겨울에는 3시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아침식사 때까지 너무 길고 배가 고프다/기상 이후에 아침식사가 배급되므로 세수를 못하고 식사를하게 됩니다.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식사의 개선/저녁식사 시간이 빠름

■ 점검시간이 너무 길거나 많다(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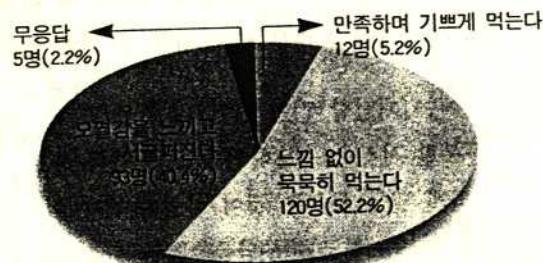
■ 기타

미결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2명)/폐방시간이 너무 이르다(2명)/검방시 개인물품을 함부로 가져간다(검방시 참담)(2명)/검방을 줄이고 검방에 필요한 인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배치/작업상여금이 너무 적다/수감 생활이 너무 편해서 재범이 많은 것 같다. 일을 체계적이고 경제성 있게 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목욕시간이 짧다/관리, 감시 위주/지나치게 폐쇄적인 교도행정, 공안수에 대한 격리 원칙에 분노/교정은 없다/좁은 공간에서 혼자만 있다보니 독방생활과 다르지 않음/인간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몸이 아플 때도 누울 수 없고 입병도 허락되지 않음/형식적이다/힘들지만 시간이 잘 지나갔다/수면 시간이 길다/취침시에 조명 조절이 가능해야/조직폭력배는 따로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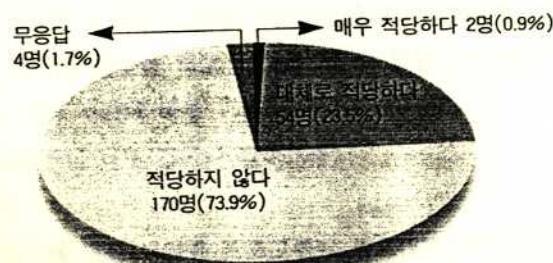
해야 한다/햇볕 구경이 필요/별로 할말이 없다/재소자에게 나이 구별 없이 함부로 반말 한다/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어야/구치소 접견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교화보다는 격리수용에 치중한 행정/감사나 순시 시에도 독서 허용/온수통에 온수를 넣고 잠을 잘 만큼 관급용품이 적다/공안수들은 출력을 하지 못함/문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사동생활을 보장해야/청송감호소에는 개선할 만한 점이 너무 많다/죄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한다/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논리정연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 어렵다/폐방 이후에 교육이 필요함/재소자가 아프면 자비부담을 해서라도 병원치료가 가능해야/교도관들의 반말 금지/교도관의 근무 태만

제8장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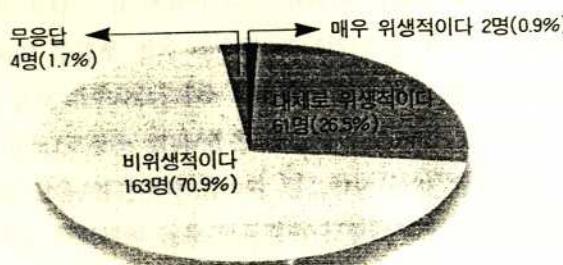
1. 당신은 교도(구치)소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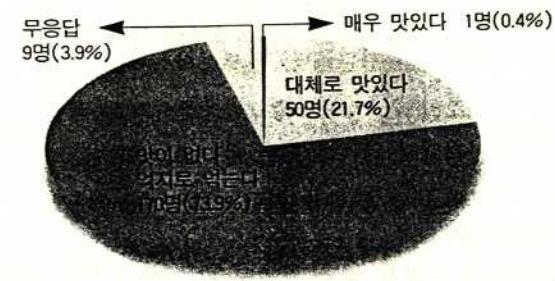
2. 당신은 교도(구치)소 밥이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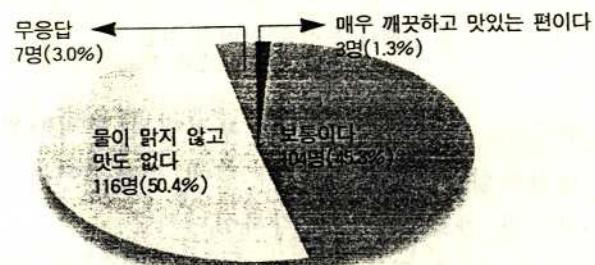
3. 당신은 교도(구치)소 밥의 위생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교도(구치)소 밥이 맛있게 조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제공되는 식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6. 교도(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 문제점 | 응답자 수 | 비율 (%) |
|-------------------------|-------|--------|
| ① 부식이 청결하지 못해 비위생적이다 | 120명 | 20.55% |
| ② 양은 충분하나 메뉴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 86명 | 14.73% |
| ③ 주, 부식의 재료가 좋지 못하다 | 119명 | 20.38% |
| ④ 조미료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 23명 | 3.94% |
| ⑤ 양이 모자란다 | 58명 | 9.93% |
| ⑥ 모든 부식이 짜다 | 39명 | 6.68% |
| ⑦ 부식이 부족하다 | 80명 | 13.70% |
| ⑧ 기타 | 53명 | 9.07% |

6명 1.03%

⑨ 무응답

- 기타—맛이 없다(10명)/부식이 부실하다(9명)/부식의 간이 맞지 않는 다(7명)/메뉴가 다양해져야 한다(5명)/위생상의 문제가 있다(4명)/양 이 부족하다(3명)/정성이 부족하다(3명)/설문조사자가 직접 드셔보셨 으면 한다/식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모든 게 최악이다/일반 군인과 비 슷하다/6, 7년 전의 재고 쌀로 밥을 하면 밥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닌 다/부식의 분배에 많은 문제가 있다/취사장 취업 재소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다/바닥에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비인간적 이다/취사장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갈취되는 부식이 많아서 실제 명 목상 지급되는 부식보다 훨씬 적은 양을 지급 받기도 한다/요리과정 에 문제가 있다/먹을 만했다/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7. 교도(구치)소 식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범칙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당신의 입에 들어갔어야 하는 몫 을 누군가가 가로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교도관과 교도소 당국, 그리고 취사장 출역수들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 129명 | 56.1% |
| ② 교도관과 교도소 당국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지만 취사장 출역 수가 부정행위를 한다 | 25명 | 10.9% |
| ③ 부정행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 10명 | 4.3% |
| ④ 잘 모르겠다 | 57명 | 24.8% |
| ⑤ 무응답 | 9명 | 3.9% |

8. 식사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주. 부식이 형편없음(35명)

감독 교도관의 성의 없는 근무 때문에 보리쌀이 익지 않은 상태로 밥 이 되어 나옴/부식이 상해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다/밥에서 쌀벌 레가 나오고 부식은 전부 탕류뿐이다/지나치게 음식이 짜다/밥과 음 식에 돌이 있을 때가 너무 잦다/부식이 부실해 사식을 사먹어야 할 정도다/재료가 심하다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개선이 시급하다/식성이 좋아 가리거나 타박도 없으나 음식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고정된 식사 종류로 입에 물린다/부식이 간이 맞지 않고 냄새가 나 먹기가 곤혹스럽다/조리와 간이 적당하지 않다/정량의 부식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신경을 써서 조리했으면 한다/말하고 싶지도 않다/법무부에서 예산을 늘리든지 돈이 없으면 자변구매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기 종류 같은 것을 정량보다 적게 준다

■ 식사의 질(영양소) 개선 시급(32명)

균형적인 식사제공 필요/영양소 배합의 부족/육류의 지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소자들의 영양이 많이 부족/생야채가 필요, 과일의 지급 필요/관식만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음식을 구매하도록 유도/사람이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

■ 위생적이어야 한다(17명)

물의 악취가 심하다/식기가 청결해야 한다/음식이 비위생적이다

■ 음식 양이 부족하다(12명)

■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9명)

■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다(7명)

양이 적어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찬밥이 나와 먹기 힘들다 /조리가 완성되지 않거나 먹기 부적당한 부식 등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 식사 관련 비리가 있다(7명)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식사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정부당국에서 책임

된 예산을 교도관들이 공명정대하게 집행하지 않고 착취를 한다/미결 혼거방의 경우 밖의 면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의 사식양을 알지 못하고 많이 넣어주어서 음식이 남거나 남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식 판매를 조장하고 있다/육류에 대해서는 개인 정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의정부의 경우 1,500명의 식사를 20명의 출역수가 모두 조리하기 때문에 취사장은 무척이나 고된 출역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으로 나오는 고기 같은 것들을 취사장 출역수들이 먹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라도 없다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배치해 줘야 한다/취사장 출역수들의 범칙행위가 심하다. 나 역시 많이 먹었으나 최근엔 그것이 다른 재소자의 뜻이라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다

■ 음식쓰레기가 많다(3명)

■ 식사용구에 문제가 있다(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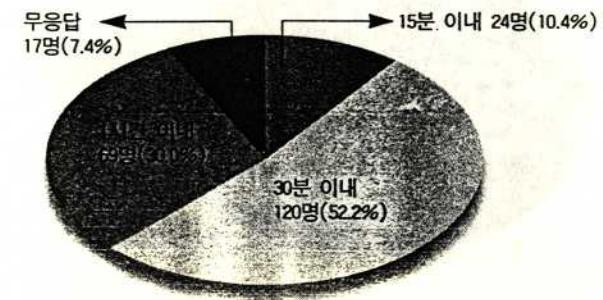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이 밥통으로 쓰인다/식기 중에 탐바구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목욕탕에 있는 재활용품으로 납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식기로 식판을 사용해야 한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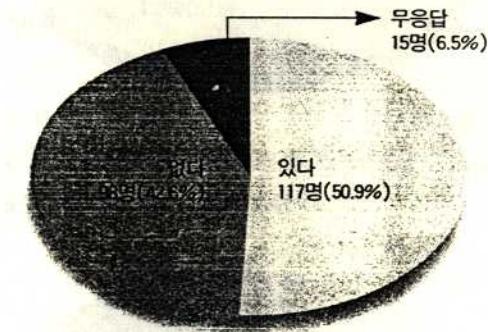
법무부에서 예산을 늘리든지 돈이 없으면 자번식품의 종류라도 허용, 확대해야 한다/국경일 같은 날엔 흰쌀밥이 나오는데 그날 저녁밥엔 보리쌀이 너무 많다.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음식에 약을 탄다는 얘기가 있어 먹기가 부담스럽다/O-157균 파동시 쇠고기가 무지 많이 나왔다/미국과 같이 자유배식을 했으면 한다/식비를 인상하고 최소한 1인 이상의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양을 줄여 식사가 남지 않도록 하고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식만은 깨끗하게 해야 한다/공장에서 저녁식사를 먹고 입방을 했으면 한다/밥이 남아서 많이 버린다/먹을 만하다/일체 부정 없이 해서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제9장 운동 · 스포츠 및 오락

1.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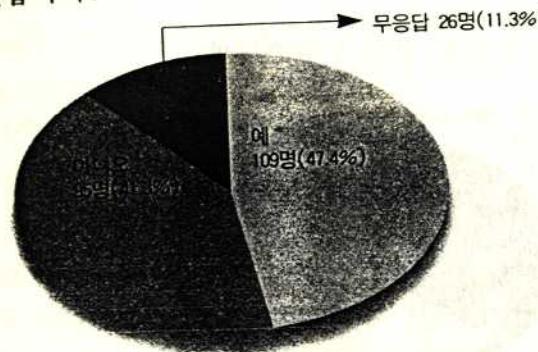


2. 당신이 있던 교도(구치)소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 운동시설, 운동기구가 있는 경우—농구대(67명)/농구공(40명)/챌봉(31명)/평행봉(27명)/배구공(26명)/테니스장(23명)/배드민턴(22명)/축구공(12명)/줄넘기(12명)/테니스기구(10명)/탁구(10명)/족구공(10명)/족구코트(9명)/땅탁구(8명)/홀라우프(7명)/배구대(7명)/축구장(5명)/당구(2명)/땅탁구채(1명)

3. 당신이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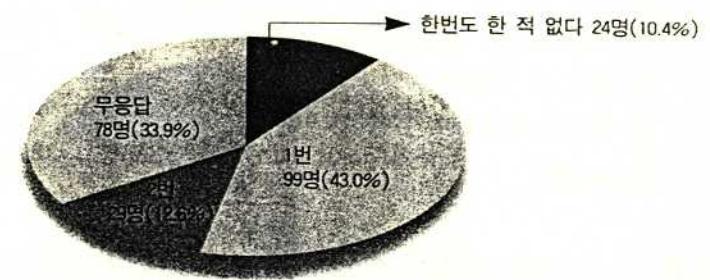
4. 운동을 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였으며, 대략 몇 사람 정도가 함께 운동을 했습니까?

① 대운동장	63명	27.4%
② 사동 사이 마당	90명	39.1%
③ 담 옆	37명	16.1%
④ 독거용 특별운동장	16명	7.0%
⑤ 기타 ()에서 ()명 정도가 같이 운동을 했다	15명	6.5%
⑥ 무응답	9명	3.9%

■ 기타

장소—소운동장(10명)/작은 마당(2명)/건물 내 운동실(2명)/농구장(1명)/독거용 특별운동장(1명)
 몇 명—30(13명)/100(7명)/40(6명)/80(5명)/60(4명)/50(4명)/20(4명)/25(4명)/1(3명)/10(3명)/2(3명)/4(2명)/8(2명)/15(2명)/120(1명)/16(1명)/45(1명)/18(1명)/9(1명)/3(1명)/70(1명)/14(1명)/15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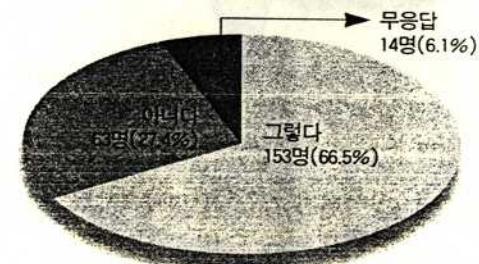
5. 재소자 운동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6. 재소자 운동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까?



7.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구치)소에서 바둑과 장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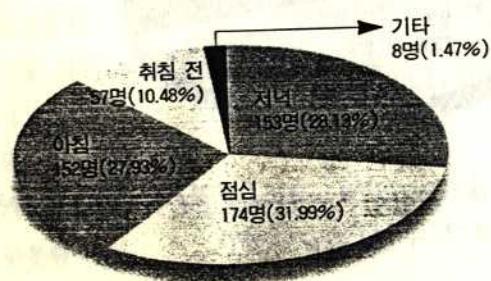


8. 영화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① 일년에 ()번 정도 구경할 수 있었다	43명	18.7%
② 가끔 구경한 일이 있다	42명	18.3%
③ 한두 번 구경한 일이 있다	5명	2.2%
④ 한번도 구경하지 못했다	112명	48.7%
⑤ 무응답	28명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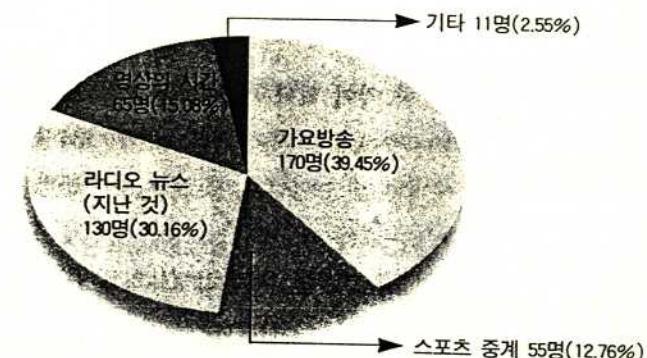
■ 몇 번—1번(11명)/1주일에 1번(7명)/20번(4명)/10번(3명)/48번(3명)/24번(3명)/5번(2명)/120번(2명)/5번(2명)/6번(1명)/60번(1명)/25번(1명)/16번(1명)/8번(1명)/3번(1명)/4번(1명)/50번(1명)/2주에 1번(1명)/월 2회(1명)

9. 라디오 방송을 어느 때 들어 주었습니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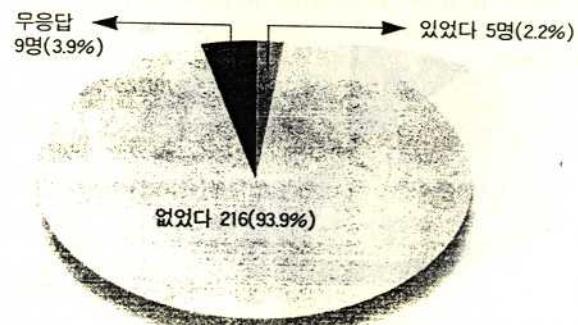
■ 기타—들은 적 없다(2명)/자기들(교도관) 마음대로 아무 때나 틀고 싶을 때 틀다(2명)/일주일에 한 번 정도 틀다(1명)/틀어주기는 하지만 재미도 없고 (방송이)잘 들리지 않는다(1명)/수시로 틀다(1명)/방송내용이 부실하다. 심지어 1년 전 뉴스를 재방송(대한항공 추락 사건)해 줄 정도다(1명)

10. 라디오 방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복수응답)



■ 기타—방송내용이 한자공부(7명)/국제축구경기를 2번정도 틀어 주었다(3명)/오락 프로그램이나 재방송이 대부분이다(3명)/교도관 마음대로(2명)/완전 짜깁기한 녹음 방송(2명)/(소리가)잘 안들려서 모르겠다(1명)/듣고 싶지 않을 때 (방송을)끌 수 있어야 한다(1명)

11. TV나 라디오의 채널 선택권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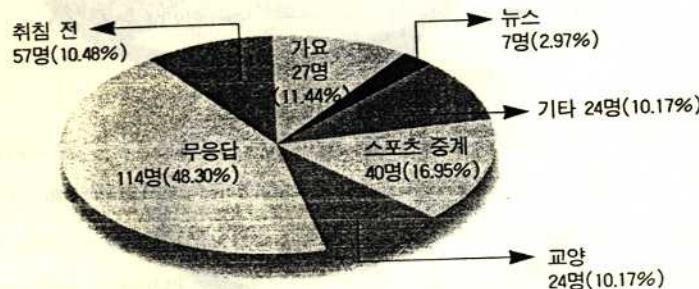


12. 교도(구치)소에서 TV 시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① 매주 ()요일에 ()시간씩 정기적으로 했다	59명	25.7%
② 부정기적으로 자주 했다	8명	3.5%
③ 부정기적으로 가끔 한 일이 있다	14명	6.1%
④ 시청한 일이 없다	134명	58.3%
⑤ 무응답	15명	6.5%

- ()요일에 ()시간 정도—토요일 2시간(12명)/일요일 2시간(11명)/일요일 1시간(5명)/토요일 1시간(4명)/1일 2시간(3명)/월요일 2시간(2명)/일요일 3시간(2명)/1일 1시간(2명)/2일에 1회 1시간(2명)/월 수요일 1시간(1명)/금요일 1시간(1명)/토요일 4시간(1명)/2일에 1회 2시간(1명)/수요일 3시간(1명)/한 달에 1번(1명)/월요일 1시간(1명)/토요일 3시간(1명)/수, 토 3시간(1명)/97년 12월 20일부터 마음껏 보았음(1명)/수, 목, 금 3시간(1명)

13. TV를 시청했다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복수응답)



- 기타—연속극(9명)/비디오 시청(8명)/오락영화(4명)/전국노래자랑(1명)/싱글벙글 쇼(1명)

14. 이 외에 교도(구치)소에 어떤 오락거리가 있었습니까?
열거해 주십시오.

- 별 오락거리 없음(49명)/윷놀이(15명)/장기(15명)/바둑(13명)/비디오로 영화 시청(8명)/운동시설, 기구의 부족(5명)/족구(3명)/카드, 화투놀이(4명)/찜불(방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2명)/소공연(장기자랑 등)이 있다(4명)/농구(2명)/탁구(2명)/땅탁구(유구)(2명)/배구(2명)/경마(1명)/제기차기(1명)/독서(1명)/신문 읽기(1명)/장기알탑쌓기(1명)/소내 운동회가 필요(1명)/한자공부와 독서를 강제, 신문보는 것도 통제(1명)/1년 1회의 재소자 위안 쇼(1명)/오락과 취미생활은 미결·기결·출역수 다 다르고 미결 및 미지정은 없다(1명)/자체적으로 방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데,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1명)/좁은 공간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매우 열악(1명)/장기바둑도 종이로 만든 것이다. 시정을 요한다(1명)/교육생에게 카세트도 지급해야 한다(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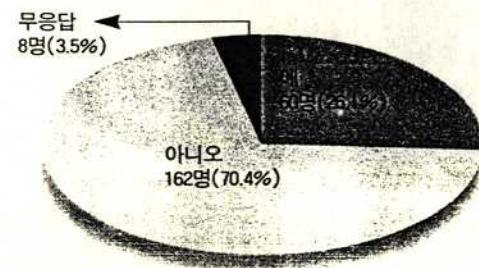
15. 그밖에 운동과 오락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운동시설 및 기구 부족(46명)
- 운동시간의 확대(45명)
- 오락기구 전무(형식적인 오락)(6명)
- 허용된 운동 이외에는 할 수가 없음(5명)
- 텔레비전 시청의 자율화(5명)
- 기타
다양한 오락시설, 기구의 구비(음악기구 등이 있었으면 한다)(3명)/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신문 이외의 매체 접촉이 가능해야 한다/엿장수 마음대로다/적당하다/운동과 오락을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시간이 너무 안 간다/음질의 향상이 필요하다/관에서 보여주는 것도 감시하니 재미가 없다/라디오 방송 채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오락도 금지시킨다/공안수들은 보통 운동 2시간과 반바지 등을 허가하지만 일반 재소자들은 운동도 하루 30분 이내로 해야 하고 반바지를 허용하지 않는다/지나친 통제와 격리, 지겨운 생활 속에서 교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신수련·요가 등을 재소자에게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운동과 오락에 제약이 많다/외국어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운동이 유일한 나이었다/전체오락이 필요하다/운동하다 다쳤다고 운동을 금지시켰다/모든 것이 제한적이어서 불만족스럽다/운동시간 외엔 밖을 구경할 수 없다/조직깡패는 운동도 마음대로 하고 복도에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일반죄수는 어렵도 없다/편안한 신발을 신을 수 있었으면 한다/수용인원이 많아 운동 시간을 늘려주기는 힘들겠지만 교도관들이 행사나 순시·검열을 평계로 있는 운동시간마저 빼앗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반강제적인 출력을 중단하고 재소자들의 체력 안배를 위하여 운동기구를 마련해 체육 특기생을 양성했으면 한다/눈오는 날에도 운동을 허용해야 한다/취미 활동을 거의 못한다/다양한 취미·특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공식적인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비공식적인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한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였으면 한다/공안수들끼리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

제10장 의료

1. 교도(구치)소 입소 직후에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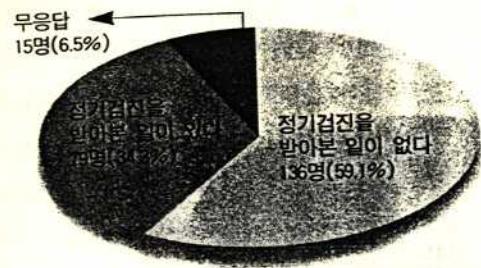


2. 위 설문에서, 입소 직후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까?(복수응답)

① 키 재기	96명	17.42%
② 몸무게 측정	102명	18.51%
③ 시력 검사	46명	8.35%
④ 치아 검사	30명	5.44%
⑤ 소변 검사	16명	2.90%
⑥ 피 검사	18명	3.27%
⑦ 엑스-레이 촬영	53명	9.62%
⑧ 혈압 검사	67명	12.16%
⑨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	21명	3.81%
⑩ 기타	22명	3.99%
⑪ 무응답	80명	14.52%

■ 기타—구두로 함(17명)

3. 수감 중 의사(의무관)의 정기검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정기검진은 몇 개월에 1회 받았나—12개월(24명)/6개월(22명)/3개월(4명)/1개월(3명)/2개월(2명)/1주일에 1회(아픈 경우)(2명)/8개월(1명)/4개월(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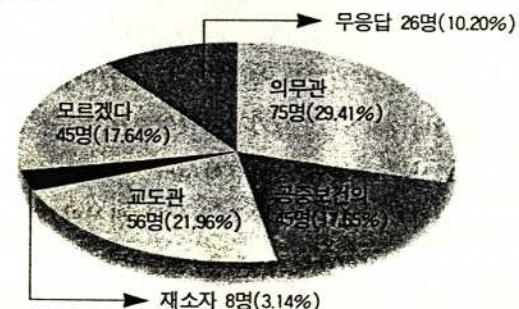
4. 당신이 있던 교도(구치)소에는 치과의사나 치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있었습니까?



5. 당신이 있던 교도(구치)소에는 약사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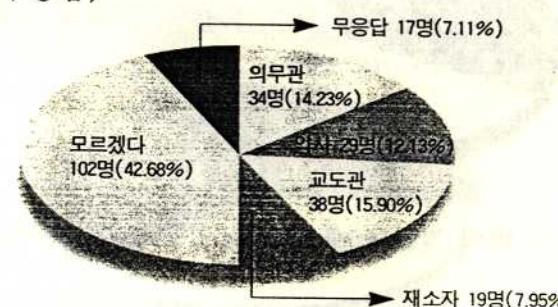
① 있었다	72명	31.3%
② 없었다	70명	30.4%
③ 모르겠다	82명	35.7%
④ 무응답	6명	2.6%

6. 당신이 아파서 의무과에 가면 누가 진찰을 했습니까?(복수응답)



■ 기타—약사(2명)/간호사(2명)/번갈아 가면서(1명)/X-Ray 기사(1명)

7. 당신이 아파서 의무과에 가면 누가 약을 조제했습니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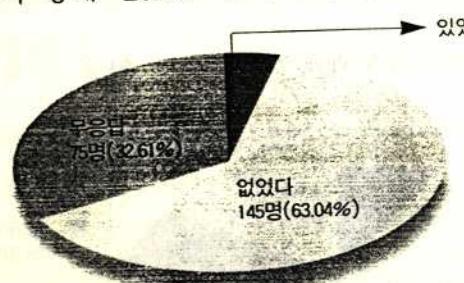
■ 기타—간호사(3명)/공중보건의(1명)/X-Ray 기사(1명)

8) 당신은 교도(구치)소에서 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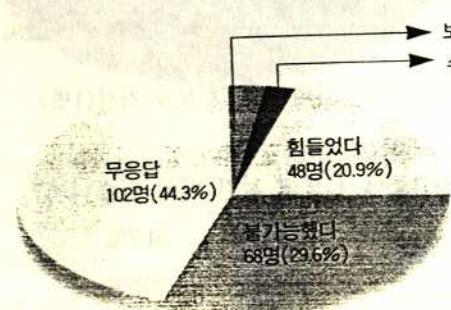
① 있다	119명	51.7%
② 없다	92명	40.0%
③ 무응답	19명	8.3%

■ 병에 걸린 일이 있는 경우 병명은—감기(33명)/동상(15명)/피부병(13명)/치아(11명)/위장병(9명)/비염(7명)/고혈압(5명)/관절염(5명)/디스크(4명)/치질(4명)/눈병(4명)/요통(4명)/골절상(3명)/당뇨(3명)/신경통(3명)/장염(2명)/전립선염(2명)/염증(2명)/열병(2명)/습진(2명)/증이염(2명)/폐결핵(2명)/위염(2명)/기관지염(2명)/식중독(2명)/간염(2명)/증기/근육통/파상풍/후두염/요로결석/황달/무릎통증/수전증/고문후유증/심장/시력약화/정신분열/실어증/이명/전립선염/편두통/신장질환/실신/변비/소화불량/원인불명의 두통/편도선염/무좀/고막파열/복통/설사/종양

9.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의 뒷바라지가 있었습니까?



10.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병동에 입원하기가 수월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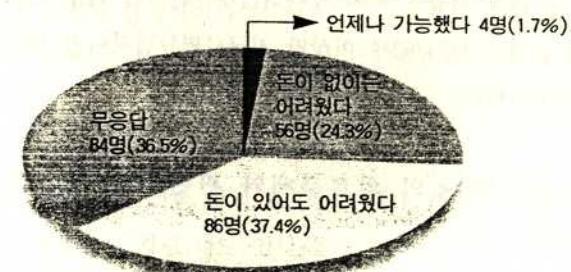


11. 당신은 외부 병원의 진찰을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진찰을 신청해 본 경우 병명은—위장병(8명)/치통(5명)/치통골절상(2명)/동상(4명)/전립선염(2명)/염증/눈질환/관절염/후두염/치질/고문후유증/좌반신마비/심장/정신분열/피부염/비염/요통/간질환/발목골절/징벌당한 후/암검사/무릎통증/위염/고막파열/디스크/신경통/요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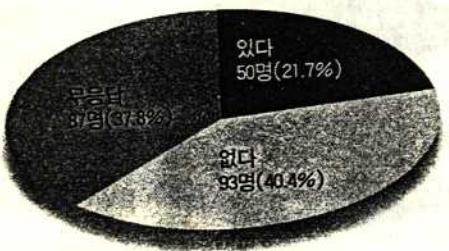
12. 외부 병원의 진찰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13. 외부에서 약품을 차입하기가 가능했습니까?

- | Response | Count | Percentage |
|-----------------------|-------|------------|
| ① 가능했다 | 31 | 13.5% |
| ② 어려웠다 | 45 | 19.6% |
| ③ 불가능했다 | 77 | 33.5% |
| ④ 외부 약품의 차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 47 | 20.4% |
| ⑤ 무응답 | 30 | 13.0% |

14.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겨울에 보온통(유단뽀)을 지급 받은 일이 있습니까?



- 보온통을 받지 못한 이유—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음(6명)/아예 지급을 안한다(4명)/건강하다고(3명)/달라고 하지 않았다(2명)/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몰랐다(2명)/국산품은 없고 수입품이기에 몇 개 없다고 주지 않음(1명)/보온통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있는 물병도 빼앗아 갔다(1명)/추운 것과 관계 없는 병이라서(1명)/젊다고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다(1명)/환자가 너무 많다고(1명)/유단뽀가 없다고(1명)/62세 이상만 지급(1명)/남자이기 때문(1명)/특정인이 독점(1명)

15. 교도(구치)소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고 약 조제를 신뢰할 수 없다(33명)
감기, 몸살, 두통, 피부병 등의 병에 너무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준다/병명에 상관없이 같은 약을 조제해 준다/지급되는 약의 대부분이 전통제이다/눈으로 드러나는 병만 인정을 해준다/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다/아프다고 계속 외부진찰을 요구해도 허락을 안해 주어서 뒤늦게 외부진찰에서 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나간 재소자를 본 일이

있다/아프다고 해도 신경 안쓴다/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도 치료를 안해 준다/외부진료가 까다롭고 진료시에도 포승과 수갑에 묶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있는 병이나 키우지 않게 해주고 없는 병을 새로 생기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병이 걸린 후 치료라도 잘 받게 해주었으면 한다/진단서 없이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공안수는 그런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수는 간단한 조기치료 외에는 거의 받을 수 없다/편도선에 대한 처방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 전문의의 부족(23명)

1명의 진료관이 모든 재소자를 상대함/3,000명에 의무관 1명, 공중보건의가 1명으로 약 조제와 진료를 다함/수용인원에 비해 의료진은 턱 없이 모자라다/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입소 전 치료와 지속성이 없음)/전문의와의 면담이 수시로 가능해야 한다/의사가 없다(의사 상주가 필요)/의무과장이 수시로 자리를 비운다/교도소 자체의 의무과 직원의 직원화가 필요하다/의사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한다

■ 진료와 조제가 형식적이다(21명)

사소한 질병에 대한 대처가 형식적이다/진료시 10초 이내로 질문하고 대답한다

■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12명)

이빨이 썩어 뽑으려면 발치 보고전을 내야 하는데 보고전이 처리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릴 때도 있다/몸이 아파서 의무과장은 만나려면 면담신청을 해야 하는데 면담 성사는 7~15일 정도 걸린다. 그때는 상태가 악화된 후거나 나은 때다/같이 수감된 사람이 치아가 심하게 아팠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조치를 받지 못해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본 일이 있다/병이 있는 재소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당장 필요한 약품도 하루 이상 걸리는 일이 많고, 외부 병원 치료도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평등한 치료가 되지 않아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가 힘들다/주사 한번 맞기가 힘들다

■ 치료행위시 돈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10명)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개인 영치금으로 약 품을 조달해야 한다/대부분의 약을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의료보험 혜택이 없고 약품 값이 비싸다/치과는 1주일에 한 번 치료를 하는데 가격이 너무나없이 비싸고 대충 치료를 하여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 는다/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영치금이 없으면 외부치료가 불가능 하다/돈 없는 사람들도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 정부와 각 기관, 교도당국의 노력이 필요(8명)

정부 각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용자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교도관 모두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전까지는 개취급 한다/정기검진을 실시해야 한다/외진을 간소화해야 한다

■ 불친절하거나 권위적이다(7명)

권위적이고 불친절로 수감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한다/욕설 을 하거나 아예 진료를 거부할 때도 있다/성의 없는 진찰과 재소자 인권무시

■ 약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6명)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아픈 이들에게 올바른 약 공급이 되지 않는다/약품구비가 필요하다/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구입하기가 어려웠다/특정한 약품구매나 외부 병원은 수혜 받기가 몹시 힘들다

■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3명)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한다(3명)

죄인을 수감하는 곳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개탄한다/의사는 1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오고 자격 없는 교도관이 의사 행세를 하고 조제, 처방한다

■ 의약품 자변이 허용되어야(2명)

■ 외부진료시 계구 사용 금지(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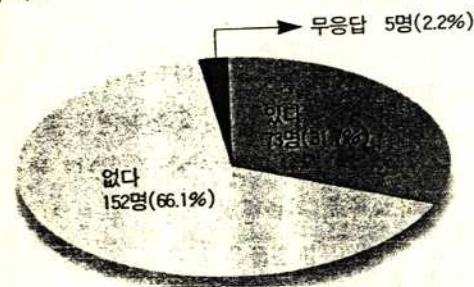
(외부진료가 까다로우며 진료시에도 포승과 수갑을 묶은 채 반응)

■ 기타

차별대우가 있다(형집행정지 등으로 나가는 정치범들의 경우)/운동이 부족하다/너무 비인간적이다/변화가 필요하다/피부병자와는 격리수용해야 한다/요도염에 걸렸을 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한마디로 마음에 안든다(부정이 제일 많다고 생각함)/양호하다/평등한 처우개선이 요망된다/모포 건조를 1주일에 2번 이상 시켜 주었으면 한다/의료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의료체계, 의료행위, 의료시설 등 모든 것의 개선이 필요하다/조기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제11장 규율 및 징벌

1.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2. 위 설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어떤 폭행을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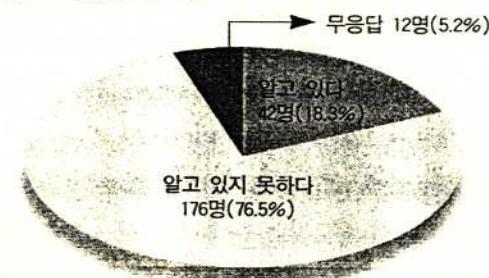
(복수응답)

① 몽둥이로 구타	23명	9.16%
② 손으로 구타	35명	13.94%
③ 물고문	5명	1.99%
④ 발로 차기	37명	14.74%
⑤ 수갑, 포승 따위의 과잉 사용	54명	21.51%
⑥ 기합	13명	5.18%
⑦ 회초리	1명	0.4%
⑧ 심한 욕설	60명	23.90%
⑨ 기타	23명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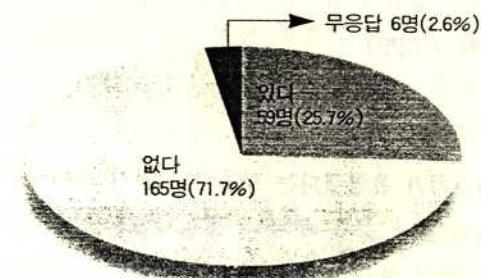
■ 기타—거꾸로 엎어놓고 손발을 뒤로 함께 묶은 채 교도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때까지 둔다/겨울에 발가벗겨 찬물 끼얹기/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전기봉으로 때린다/고문한다/50cm 자로 맞았다/바늘로 온 몸을 찔렸다/일명 통닭구이 상태에서 몽둥이와 발길질을 당했다/재판

을 받으려 가는 도중에 나이 드신 수감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비교도 대에게 항의하다가 징벌조치 당했다/교도관이 말을 함부로 한다

3. 당신은 행형법 제46조에 규정된 징벌의 다섯 가지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



4. 당신은 징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5. 위 설문에서 “있다”고 대답한 분은 어떤 규율위반 행위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까?

■ 재소자들끼리의 싸움(9명)

한여름 무더위로 같은 방에 수감 중이던 동료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가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얻었고 나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할 때도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야 했다/수용자의 폭력을 막기 위해 나섰

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외부 병원 치료를 요구하자 징벌을 받음. 징벌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다른 사방의 재소자와 통방을 했다는 이유(5명)

■ 단식을 했다는 이유(4명)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단식으로/단식으로 15일 금치/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단식과 시위로 소내 소란 등의 혐의

■ 소내 처우에 관한 항의농성(4명)

■ 출입금지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음(담배 등)(4명)

■ 교도관과의 싸움(4명)

교도관과의 말다툼 끝에/지시 불이행/교도관과 언성을 높여 싸웠다/소장 및 보안과장의 부당한 행위를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휴대하고 검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를 부정서신이란 혐의로 징벌조치

■ 재소자끼리 서로가 필요한 물건을 바꾸다가(같은 재소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해 주다가)(2명)

■ 도박(2명)

■ 기타

방에서 다른 재소자가 흡연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아서/벽에 기대어 잠을 잤다고 해서/소장 순시 때 소내 불편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불행히도 규율위반이라고 함/교도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얼굴에 물을 뿌림

6. 그 규율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까?

① 당했다(어떻게)	39명	17.0%
② 당하지 않았다	58명	25.2%
③ 무응답	133명	57.8%

■ 폭행형태—구타(10명)/폭언(8명)/계구 과잉 사용(4명)/수갑(3명)/모포를 씌우고 구타(2명)/비녀꽂기/수갑 찬 채로 구타/족수정/포승/독방감금/4~5명에게 사지가 끌려/사슬 착용/멱살을 잡힘/몽둥이, 구둣발, 통닭구이, 포승/징벌은 아니지만 겨울에 화장실에서 찬물로 목욕을 하다가 끌려나와 30분이 넘도록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 뚫고 앉아 있었으며 포승줄에 묶여서 고생했다/심하게 묶이고 몽둥이로 맞았다/포승줄로 묶어 몽둥이 세례/포승, 수갑, 욕설

7. 당신이 징벌을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징벌을 선고받았습니까?

① 경고	21명	30.0%
② 1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6명	8.6%
③ 청원작업의 정지	7명	10.0%
④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0명	0%
⑤ 2월 이내의 금치	34명	48.6%
⑥ 기타	2명	2.9%

■ 기타—운동정지/1개월 접견 금지

8. 당신이 징벌을 받았다면 정식으로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 이유를 통지 받았습니까?

① 정식 서면으로 통보 받았다	3명	5.0%
② 계장 이상의 간부로부터 구두로 통지 받았다	8명	13.3%
③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자리에서 통지 받았다	13명	21.7%
④ 주임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 받았다	6명	10.0%
⑤ 사동 담당교도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 받았다	8명	13.3%
⑥ 정식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지나가는 말로 내가 징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	14명 23.3%
⑦ 어떤 형태로든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	8명 13.3%

9. 당신이 징벌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아울러 받았습니까?

① 가족이나 친지와의 면회 금지	51명 14.61%
② 편지의 수신과 발신 금지	58명 16.62%
③ 운동 금지	56명 16.04%
④ 종교집회 참가 금지	45명 12.89%
⑤ 위안·오락 등 일반 집회 참가 금지	43명 12.32%
⑥ 세면 금지 또는 제한	18명 5.16%
⑦ 목욕 금지 또는 제한	32명 9.17%
⑧ 침구나 의류 등 사용 제한	33명 9.45%
⑨ 기타	13명 3.72%

■ 기타—자변식품 금지(3명)/독서·신문 금지(2명)/젓가락 금지/수갑·쇠사슬 묶임/포박/약품유입 불가/수갑·포승 당한 채 세면/방송구·혁수정 착용/먹방 생활/겨울에도 기상 때 모포 수거

10. 당신은 교도(구치)소에서 위 다섯 가지 징벌 종류 외에
변질된 징벌 형태를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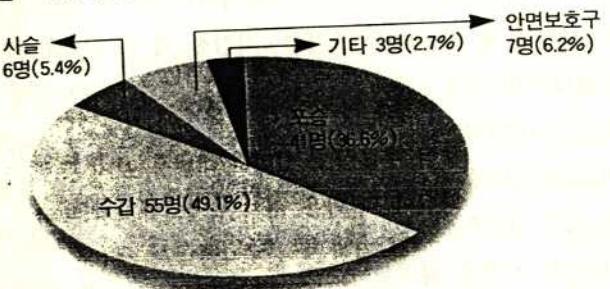
■ 징벌 형태—심한 시승과 연쇄를 당하였다(5명)/몽둥이 구타당했다(5명)/포승줄로 묶고 구타하고 징벌방에 감금하였다(4명)/혁수정을 찬 채 맞는 것을 보았다(3명)/복도에서 손들고 무릎꿇고 앉아 있기를 시켰다(3명)/앉은 자세에서 3시간 이상 부동자세로 있어야 했다(2명)/징벌 후에도 시갑된 채 지냈다(2명)/사슬·시갑한 채 3~4명씩 0.79평 감방에 수용했다(2명)/운동·세면·목욕을 금지시켰다(2명)/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용되었다(2명)/수갑과 뱃줄을 채워 독방에 가두었다/혁수갑으로 묶여 있었다/포승에 묶여 무릎꿇고 있었다/대변을 보지 못했다/사동복도를 앉은 걸음으로 다니며 “잡담을 하지 맙시다” 외쳤다/서신을 불허했다/영화 시청을 금지했다/접견을 금지시켰다/수갑·포승·방성구·쇠사슬을 함/수갑 채우고 독방에 보냄/지하독방 감금했다/포승을 묶고 1~10일 독방에 가두었다/철창에 매달고 가죽혁띠로 때렸다/큰통에 물을 가득 담고 머리를 눌렀다/겨울에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몸에다 찬물을 뿌리는 것을 봤다/징벌 기간 동안 시승·시갑을 풀어주지 않아 식사나 잠잘 때 힘들었다/수갑을 찬 상태에서 몽둥이와 손으로 구타당하였다/규정 외 장치를 이용해 포승했다/집단 욕설을 들었다/징벌과잉으로 재소자가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간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집단으로 폭행하였다/기합을 줌/겨울에 하루종일 복도에 두릅을 끓린다/포승을 묶고 입에는 안면보호구를 물리게 하고 복도에 끓린다/보안과장의 권한으로 먹방에 수감되었다/손발이 묶인 채 약 6개월간 구금되었다/수갑을 뒤로 채우고 뱃줄로 꽁꽁 묶는다/교도관들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한다/교도관 개인이 분풀이를 한다

11. 당신이 징벌을 받았다면 징벌 중에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착용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55명	23.9%
② 없다	28명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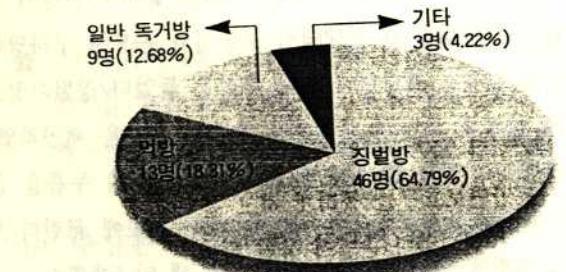
③ 무응답 147명 63.9%

12. 위 설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아래 계구 중 어떤 것을 착용했습니까?(복수응답)



■ 기타—혁수갑(2명)/4가지 모두 하는 것을 보았다

13. 징벌을 어떤 장소에서 받았습니까?(복수응답)



■ 기타—혼거실/내가 있는 방/빈사동의 빈공간

14. 당신이 만약 징벌방을 경험했다면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화장실까지 0.7평 방에서 3명이 지내야 했음/0.75평의 공간에 감방문과 창문에는 2cm 두께의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은 2m 높이에

있어 밖을 전혀 볼 수 없었다/매우 비좁은 방에 4~5명씩 집어넣었다/아무 것도 없는 좁은 방이다/사동복도에 근무한 교도관과 대화할 때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식구통에 대고 이야기를 한다/2중문과 조그마한 공기통이 있다/살 곳이 아니다/약 0.8평 가량의 독방이다/악취가 나오고 잘 수 없는 좁은 방/앉아서 빨을 딛지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화장실이 없고 식사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아주 좁고 더럽다/일반방과 같은 평수가 적을 뿐이다/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 창문이 없고 시찰구와 배식구는 있어도 넓이는 판자 15개 정도에 길이는 2m가 약간 넘었고 방 안 마룻바닥에 이어 물을 부어 사용하는 변기가 설치된 방/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방/창문은 천장 밑에 세 뼘 크기로 있고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방/0.7평에 문은 이중이고 환기창은 없으며 변기통이 있고 전구는 10축짜리 한 개/시찰구 이외에는 밖과 완전히 차단, 감시 모니터가 달린 징벌방/구조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빨을 뺀을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어짐/감시카메라 설치, 2평이 조금 안되는 곳에 3명이 수용됨/일반독방과 같으나 두꺼운 아크릴로 막혀 있음/모든 게 통제되어 있는 답답하고 좁은 방/1평 정도의 방에 화장실이 있음/안양 교도소의 경우에는 일반독거방에 징벌자들을 수용하여 1평도 안되는 방에 3명 수용/깜깜하고 공기유통이 되지 않아 대단히 건강에 해로움/1평도 안되는 갑갑한 방이라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0.75평의 엄중독거실/문을 열 수 없고 자살방지용 벽에 스티로폼을 둘러쌈. 감시틈은 2중이고 화장실 및 세면장이 있음/조사 시에 가보았음. 뒷문이 세로 가로 5센티로 개폐가 불가능하고 앞 시찰구는 아크릴로 폐쇄. 뒤 변소간 옆에 20센티의 환기구/춘천 교도소는 4사 상층과 1사 하층을 징벌사동으로 사용하는데 크기는 15~2평 정도이며 사방벽은 스티로폼 위에 합판을 덧붙이고 뒤쪽 창문에는 코팅을 한 아크릴판, 철망, 창살이 뒤덮여 있음/0.75평의 뒤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 관모포 2장을 지급하지만 낮에는 거두어 간다. 겨울에는 징

별이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임/0.94평으로 변기 는 시멘트로 대변을 보고 내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창문이 없는 먹방으로 시찰구와 식구통이 나있고 넓이는 0.6~1.5평 정도/반 평도 채 안되는 철창 속에서 변소는 문도 없고 감방 안은 먼지나 냄새 그리고 검은 고무신이 놓여 있으며 옆방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깊숙거리 는 소리가 들린다/12평 정도의 독방구조에 환기창도 없고 변기통에 대소변을 보게 되어 있으며 정벌자가 많으면 10명까지 함께 생활해야 함/방은 좁고 천장은 낮고 화장실은 더럽고 바닥은 마루로 수용생활을 할 수 없는 공간/독거방, 수감자는 수갑을 착용한다/창문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다. 신발 이외에는 어떠한 물건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1평 이 못되는 방에 아무것도 없고 겨울에는 한 사람, 여름에는 꽁꽁 묶어 5, 6명의 재소자를 수용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담요 한 장 없고 밤에만 얇은 담요 한장을 준다/1평도 안되는 방의 사면에 자해를 할까 봐 충격방지를 했으며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다/1평 남짓한 방에 3명 정도 있었으며 사람이 통하는 환기구는 식구통과 바람도 들지 않는 창문뿐이었다. 또한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고 수도는 화장실과 같이 있었으며 여름에는 덥고 사람이 없어 정말 죽는 줄 알았고 개미가 올라오는데 물리면 통통 부어 고생이 심했다/본인이 정벌 받은 방은 별거수 용으로 정벌방이 아닌 후로링 판자 21개 넓이의 150센티미터 길이에 80센티 넓이의 방

15. 당신이 만약 먹방을 경험했다면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체 창문이 없고 낮이나 밤이나 전등을 켜놓고 있음/창문이 없어 공기, 햇볕이 들지 않고 비좁아서 잠들기 어려움/환풍이 안되고 1평 남짓/0.7평에 한여름에는 5~7명 수용하고 겨울에는 1~2명 수용/약 0.8 평으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매트리스 한 장에 바로 변기와 수도

가 설치되어 있는 먹방이다/정벌방과 동일한 구조/3명이 사용해야하는 방을 두 개로 만들어 환기구멍이 없고 출입문이 이중문/0.7평에 문은 이중이고 환기창은 없으며 구석에 변기통이 있으나 전구는 없음/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고 구멍은 시찰구뿐임/0.75평의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창문은 없고 흐릿한 백열등만 존재/0.6평짜리 정벌방은 너무 비인권적이어서 없어져야 한다/몸을 누이면 꽉 찰 정도로 비좁고 감시틈은 밖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진 수도꼭지 하나에 변기 구멍이 있는 상태/보통 감방이나 정벌방 반 정도의 축소된 듯한 공간으로 2중문으로 되어 있고 변기통이 나무로 된 등근 것으로 놓여 있었고 어둡고 침침하였다/경험해 보았음. 문은 이중 구조, 너무 어둡고 냄새 남/1평 남짓한 규모에 환기가 되지 않음/어둡고 공기가 매우 탁하여 심할 정도의 악취가 많이 난다

16. 정벌 중 교도(구치)소 당국 측에서 체중, 혈압을 재는 등 건강체크를 했습니까?

- | | | |
|----------|------|-------|
| ① 했다 | 40명 | 17.4% |
| ② 하지 않았다 | 47명 | 20.4% |
| ③ 무응답 | 143명 | 6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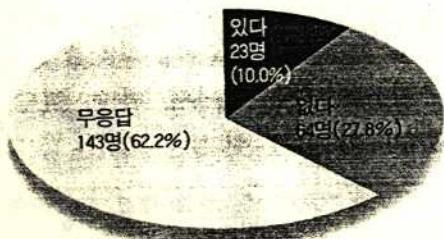
17. 교도소 간부들로 이루어진 정벌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 | | |
|------------|-----|-------|
| ① 알고 있다 | 81명 | 35.2% |
| ② 모른다 | 65명 | 28.3% |
| ③ 들은 적은 있다 | 27명 | 11.7% |
| ④ 무응답 | 57명 | 2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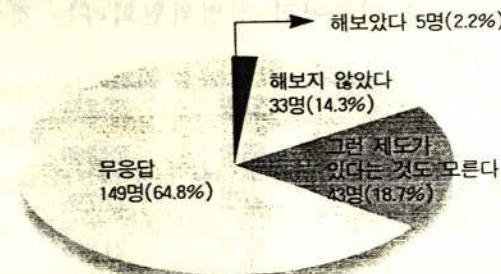
18. 징벌을 받을 때,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징벌위원회 앞으로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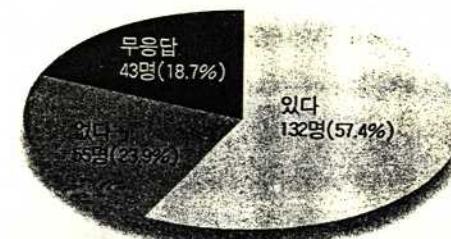
19. 징벌을 받을 때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신 일이 있습니까?



20.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21.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22. 단식을 해보았다면 몇 번 해보았으며, 각각 며칠씩 해보았습니까?

■ 1번

1일(3명)/2일(1명)/3일(20명)/4일(4명)/5일(4명)/7일(11명)/10일(3명)/13일(1명)/15일(1명)

■ 2번

1일(1명)/2일(1명)/3일(5명)/4일(2명)/5일(3명)/6일(3명)/7일(7명)/8일(1명)/9일(1명)/10일(1명)

■ 3번

3일(2명)/4일(2명)/5일(2명)/6일(1명)/7일(6명)/10일(2명)

■ 4번

3일(2명)/5일(2명)/6일(1명)/10일(2명)

■ 5번

3일(1명)/5일(3명)/7일(1명)

■ 6번

3일(1명)/5일(4명)/7일(1명)/8일(1명)

■ 7번

1일(1명)/4일(1명)/10일(1명)

■ 기타

8번—9일(1명)/8번—10일(1명)/10번—3일(3명)/10번—6일(1명)/10번—9일(1명)/다수—수일(5명)

23. 단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정치적 이유(69명)

전·노사면 반대/공안탄압 분쇄/한총련 이적단체 철회/국보법 철폐/양심수석방/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김영삼 구속/김준배 열사 등 열사 추모/범민족대회 성사

■ 처우개선(32명)

■ 소내의 투쟁 때문(14명)

교도소 내 폭행 책임자 처벌/구타의 항의/관규에 불복/재소자 폭행/면회를 가족으로 제한함/동료가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데 대해서 공장 전체가 3일 동안

■ 기타

금식(3명)/건강을 위해서(3명)/개인적 결의(2명)/의무과장·보안과장·소장 면담 요구(2명)/구속에 대한 검찰 항의와 사건조작에 대해 경찰에 항의/나의 억울함을 반영하기 위해(교도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눈이 실명되었다)/고통체험/작업상여금 감봉/보호감호의 부당성으로/탄원서 제출을 거부당해서/경각심 고취/대중투쟁의 일환으로/폭행 교도관 처벌요구/전향공작 반대/보호감호 철폐 및 가출소 완화/구타관계/교도관과 싸우고 시승·시갑되어 독방에 입실/마음을 달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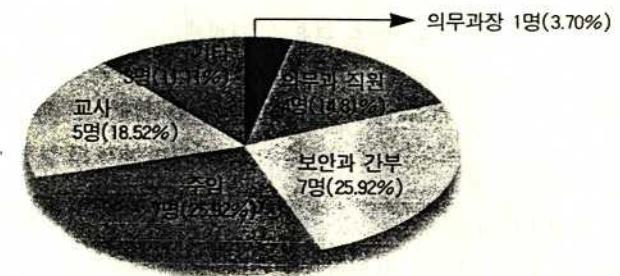
24. 단식을 했다면 강제급식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20명	8.7%
② 없다	115명	50.0%

③ 무응답

95명 41.3%

25. 강제급식은 누가 했습니다?(복수응답)



■ 기타—경교대 동원(2명)/보안과 교도관

26. 징벌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 계구의 사용(7명)

어떤 이들은 징벌중 수갑·사슬·족쇄까지 하기도 했고 연쇄를 착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하다/조사기간 10일과 징벌기간 60일 동안을 사슬과 수갑으로 보낸 것이 정말 억울하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비인간적 구타와 감금, 포승줄로 묶은 다음 욕설을 함/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징벌기간에 도주·자살·소란의 행위가 없는데도 행해지는 계구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안양은 구타, 폭행이 자행되며 혁수정이 사용되고 있다

■ 징벌 내용의 문제, 남발(11명)

인간이 인간에게 체형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징벌제도보다는 교정 교화 차원에서 정신교육을 시행하길/일반재소자에 대한 교도관의 욕설과 구타 등이 공공연하다/징벌은 당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징벌을 몇 차례 목격했고 한번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감사 때

취침 안하고 독서를 했다고 한 미결수가 관구실에서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징벌은 신체적 억압보다는 운동금지, 독서금지 등 경신교육으로 했으면 한다/체벌은 인성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재소자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나/김우현 학형이 출역 도중 규율을 위반했다고 계장에게 구타를 당하였고(97년 8월경) 이에 항의 단식을 하자 접견·서신 등의 외부교통이 금지되어 변변치 못하게 처리되어짐/여자아이가 징벌방에 갇혀 밤마다 괴성을 질렀는데 정신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징벌 사유가 단순한 불복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징벌방에 있으면서 사람이 끌이 아니었다고 한다. 단순한 사슬이나 구금이 아닌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너무 심하다. 아무리 교도소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인간을 짐승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함/면회금지 등의 협박이 있다/보복성 징벌이 있다/징벌의 남용을 막아야하고 간부처벌제도가 있어야 한다/최소한의 규정에 대한 고지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

■ 일방적인 징벌(8명)

징벌위원회에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처하는 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교도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종종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해졌으면 한다/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징벌시에 권리와 법적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개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 가족이나 변호사 등의 참석이 필요하다

■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3명)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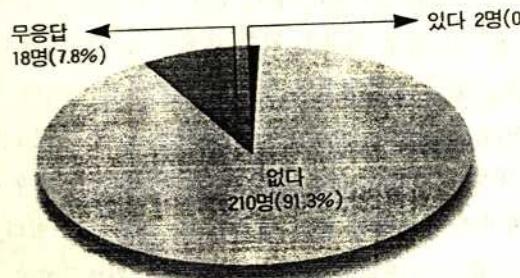
징벌을 당하지 않아서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재소자가 작은 잘못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얼씨구나 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잘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작하지 않는다/공정하지 못하게

특별한 수감자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감옥 속의 감옥이라 고통스럽고 오기가 생긴다/과밀한 수용상태가 모든 징벌사유를 낳게 한다고 본다. 또한 관에서도 이로 인해 징벌위원회를 열게 되면 모든 기타 업무는 마비되지 않을까?/할말은 많다. 그러나 그 고통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다/요즘은 정치범, 공안사범에 대한 징벌이 거의 없는 듯하다. 하나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역시 심각한 듯하다/집필규정에 대한 문제로 강제이송되었고 그에 대한 고소장은 거부당했다. 각종 불이익과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제한당함/징벌 사유와 관계없이 교도관의 폭행이 앞서고 조사기간이라는 이유로 독방에 1~2일 정도 강제 수용되었다/경비교도대를 없애야 한다/보복이 아닌 시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전향거부로 온몸을 바늘로 고문당했다/재소자 길들이기 식이며 수시로 법무부에서 감사가 가능해야 한다/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교도소 당국에서 정해놓은 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다 처벌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변구매가 허용되지 않는다/재소자를 교화시킬 능력이 없는 교도소 당국이 재소자에게 징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징벌 이전에 진정한 교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약자를 위해 징벌은 꼭 있어야 한다. 가벼운 사건은 징벌로만 하는데 추가로 다른 징벌을 만들어야 한다.

제12장 불복신청제도

당신은 수감생활 과정에서 당신에게 강요되는 교도(구치)소의 위법적인 혹은 부당한 처사에 정식으로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복신청이란 권한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처사의 취소나 변경을 위하여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혹시 당신은 교도(구치)소에 입소할 때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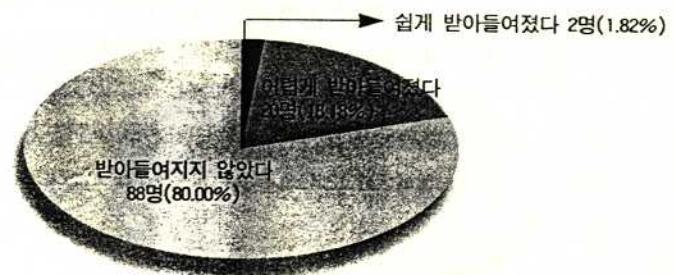
- 위 설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지 받았습니까?

① 문서로 통지 받았다	0명	0%
② 말로 통지 받았다	2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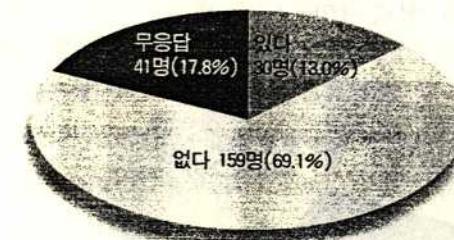
- 담당 교도관에게 소장 면담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104명	45.2%
② 없다	113명	49.1%
③ 무응답	13명	5.7%

- 위 설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 소장을 실제로 면담해 본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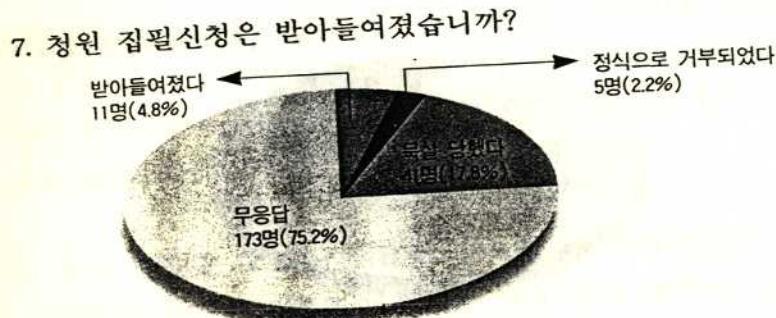
■ 면담 횟수는—1(13명)/2(8명)/3(6명)/4(2명)/5(2명)/8(1명)/10(1명)/수시로(1명)/여러 번(3)

-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기 위하여 집필신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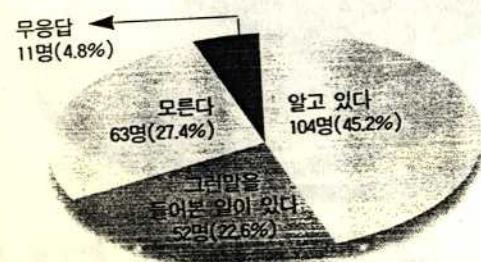
① 있다	46명	20.0%
② 없다	144명	62.6%
③ 무응답	40명	17.4%

■ 집필신청 횟수는—1(12명)/2(11명)/3(7명)/5(2명)/8(1명)/10(1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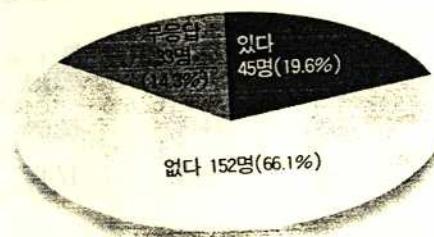
차례(2명)



8. 판사, 검사, 법무부 당국자가 교도(구치)소를 순회점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9. 위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말로 혹은 문서로 청원을 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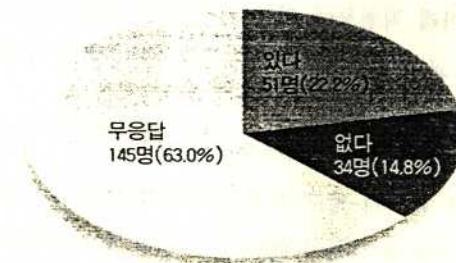


10. 위 설문에 “없다”라고 답한 분은 왜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복수응답)

- ① 누가 순시하는지 전혀 몰랐다 60명 32.26%
- ② 교도(구치)소 당국의 보복이 두려웠다 16명 8.60%
- ③ 청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72명 38.71%
- ④ 수감생활에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8명 4.30%
- ⑤ 기타 30명 16.13%

■ 기타—청원 자체를 몰랐다(4명)/미리 몰라서 미처 준비를 못했다(3명)/순회점검 자체가 형식적이다(3명)/내가 있을 때는 (순열공무원, 소장 등이) 우리 사동으로 온 적이 없다(3명)/순시 때 그냥 사람들을 들러보는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3명)/검열관을 대하지 못했다(2명)/불이익 때문에(2명)/미결 사동으로는 온 적이 없다(2명)/청원을 하라는 교육이 없었다/하고 싶지 않았다/독방으로 보냈다/청원 이후에 이감 간다/노상면담을 요구하면 방으로 간다/불편하고 부족하지만 지낼 만했다/순회점검 때 청원한 사람은 독방으로 갔다/순회점검이 올 때 청소 정돈 등으로 바빠서 얼굴도 보지 못했다

11. 순회 검열관에게 청원하려고 한 분은 교도(구치)소 당국자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제지당한 일이 있습니까?



12. 불복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은?

- 재소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른다(21명)
화실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는 직원도 없었다/그런 제도가 재소자에게 널리 알려져 재소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그저 실효성이나 있는 제도입니까?/그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기나 해야지요/(제도 자체에 대한)정식적인 통보가 필요하다/청원권이 가족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 사문화된 청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제도의 실질화를 위한)법무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 이후의 보복이 두렵다(7명)
이후 가해지는 개인적인 후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모두들 불편해도 보복이나 징계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순회가 오면 지적이 두려운지 수감자만 교도관이 괴롭힌다
-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14명)
검사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무시당했다/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도소 내의 비리나 무능을 폭로할까 봐 의도적으로 막았다. 그리고 신청과정에서 중간계급들이 차단하는 사례가 99%다/청원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으며 고소고발건의 목살도 심각한 수준이다/순회 검열관이 청원을 기피한다/불복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시설에 불만이 있어 청원이나 소장·보안과장 면담을 신청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된다/서류감사에만 치중하며 면담 등을 일선 교도관들의 막는다/교도소에 대한 좋지 못한 말을 적으면 모든 신청이 묵살된다
- 청원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2명)
소장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정국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청원 시 관계 교도관들의 간섭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원제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2명)
자유롭게 불복신청제도가 이루어지고 소장면담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 불복신청제도를 재소자가 볼 수 있게 제도, 명문화할 필요(3명)
재소자 권리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입소시 개개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 형식적이다(4명)
법무부 순회는 형식적이고 창살 밖으로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 버린다
- 기타
좀더 자연스럽게 면담이 이루어졌으면 한다(2명)/정벌기간 내의 청원 금지조항 삭제 필요하다/소에서 허용하지 않았다/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수많은 몰래 카메라를 한순간에 틀어놓고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재소자에게 법적 권리를 가질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억울한 수행생활을 하는 숫자가 10~15% 정도이다/교도소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순회검열관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철저히 차단하며 관계 직원에게 도리어 미친놈으로 몰려 묵살당한다/투쟁시에 커다란 무기가 된다/당연히 불복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장 면회

1. 당신의 실제 면회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보통

1분(1명)/2(4명)/3(21명)/4(4명)/5(70명)/7(8명)/8(1명)/10(44명)/15(11명)/20(15명)/25(2명)/30(18명)/40(3명)/45(1명)/60(1명)

■ 많을 때

3분(5명)/4(3명)/5(23명)/6(3명)/7(17명)/10(30명)/15(21명)/20(20명)/30(26명)/35(1명)/40(3명)/45(1명)/50(2명)/1시간(15명)/2시간(1명)

■ 적을 때

1분(2명)/2(9명)/3(35명)/4(9명)/5(29명)/6(1명)/7(7명)/8(3명)/10(24명)/15(7명)/20(7명)/30(2명)

2. 면회 시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① 충분하다	9명	3.9%
② 조금 아쉽지만 그런대로 부족하지는 않다	34명	14.8%
③ 부족한 편이며, ()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100명	43.5%
④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64명	27.8%
⑤ 무응답	23명	10.0%

■ ③의 경우—5분(7명)/10(29명)/15(3명)/20(1명)/30(25명)/40(4명)/50/60(12명)

■ ④의 경우—10분(8명)/15(9명)/20(7명)/30(31명)/50(2명)/60(6명)/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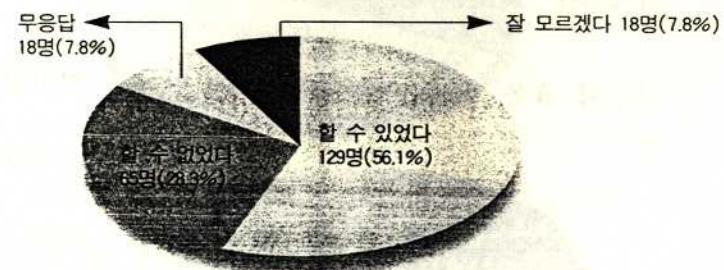
간/3시간(2명)

3. 면회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분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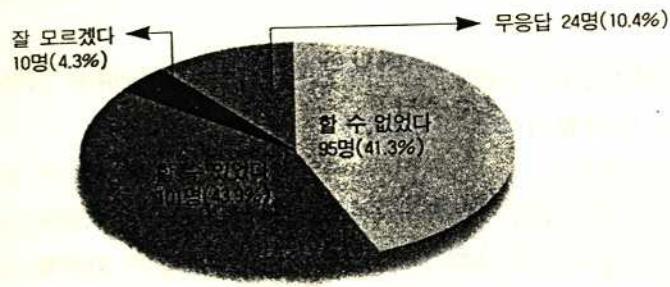
① 시설부족	23명	7.10%
② 인력(교도관) 부족	27명	8.33%
③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	100명	30.86%
④ 수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 부족	101명	31.17%
⑤ 보안상 이유	18명	5.55%
⑥ 기타	3명	0.93%
⑦ 무응답	52명	16.05%

■ 기타—처우상 보복성 제한/환경, 시간, 눈치/면회를 오는 것은 안부도 중요하지만 재판진행 내용이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인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4. 토요일 오후시간에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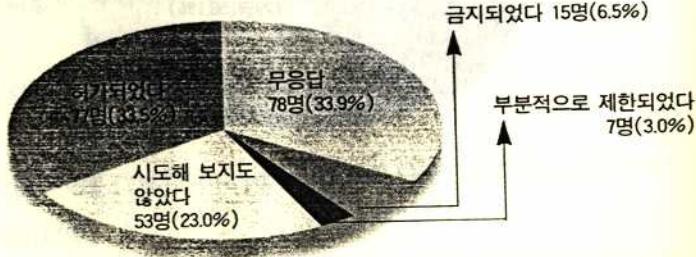
5. 일요일에도 면회를 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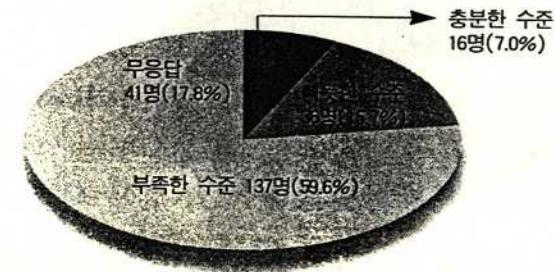
6. 교도(구치)소에서 면회객을 제한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면회시켜 주었습니까?

① 가족에 한정	28명	12.2%
② 가족과 함께 오는 친척에 한정	9명	3.9%
③ 가족, 친척 및 가족과 함께 오는 친지에 한정	30명	13.0%
④ 가족이 전화로 신분만 확인해주면 친지도 면회 14명		6.1%
⑤ 공범이 아니거나 출소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사람으면 누구나 면회할 수 있었다	66명	28.7%
⑥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면회할 수 있었다	53명	23.0%
⑦ 무응답	30명	13.0%

7. 어린이 혹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면회는 허가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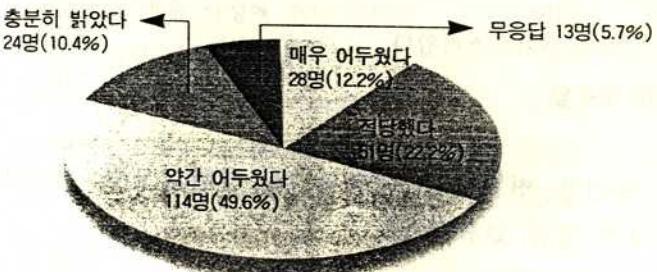


8. 면회실은 몇실이나 있었습니까? 그 수는 충분한 면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몇실—1개(10명)/2(9명)/3(16명)/4(7명)/5(23명)/6(22명)/7(4명)/8(7명)/9(1명)/10(14명)/11(6명)/12(8명)/13(2명)/14(4명)/15(5명)/16(2명)/17(2명)/20(10명)/21(2명)/26(1명)/3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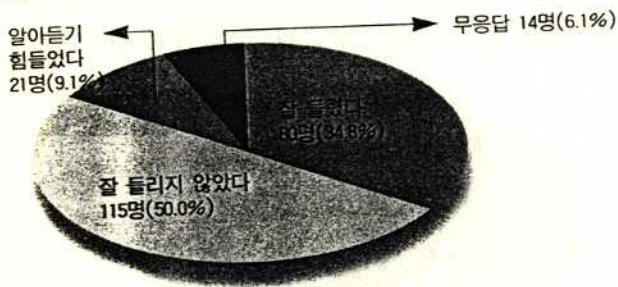
9. 면회실은 면회객의 얼굴이 환히 보일 만큼 밝았습니까?



10. 면회할 때 자연의 목소리로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대화를 했습니까?

① 자연의 목소리로	177명	77.0%
② 인터폰 스피커로	39명	17.0%
③ 무응답	14명	6.1%

11. 면회할 때 면회객의 말이 잘 들렸습니까?



12. 면회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까?

① 매우 자유로웠다	16명	7.0%
② 입회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웠다	80명	34.8%
③ 입회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자유스러웠다	98명	42.6%
④ 매우 부자유스러웠다	23명	10.0%
⑤ 무응답	13명	5.7%

13. 당신은 면회객과 대화할 때 입회교도관으로부터 제지 당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28명	12.2%
② 한두 번 있었다	96명	41.7%
③ 대화 내용을 조심했기 때문에 한번도 없었다	72명	31.3%
④ 거리낌없이 대화했지만 한번도 제지당하지 않았다	20명	8.7%
⑤ 무응답	14명	6.1%

14. 제지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당했습니까?(복수응답)

① 면회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13명	5.39%
② 교도관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주의를 준 뒤 대화를 시작했다	61명	25.31%
③ 대화 도중에 가벼운 주의를 받았다	75명	31.12%
④ 기타	2명	0.83%
⑤ 무응답	90명	37.34%

■ 기타—교도관이 면회를 중단시킨 후 가족을 가라고 했다/끝난 후에 주의를 받았다.

15. 제지당했다면 어떤 대화 내용 때문이었습니까?(복수응답)

① 당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	42명	14.24%
② 교도소 내부 사정에 관한 이야기	84명	28.47%
③ 면회객과 다투었을 때	8명	2.71%
④ 정치나 이념에 관한 이야기	44명	14.91%
⑤ 경찰관, 검사, 교도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	23명	7.80%
⑥ 기타	6명	2.03%
⑦ 무응답	88명	29.83%

■ 기타—단식이야기(2명)/실천 지침을 하달할 때/폭행사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연락/전화연락/공범에 대한 이야기

16. 수감중 면회가 금지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와 금지당한 기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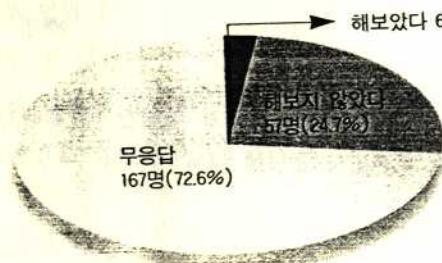
■ 금지기간

1달(5명)/2달(4명)/3달(1명)/1심 동안(1명)/15일(1명)/3일(1명)/5일(1명)/1주일(1명)/며칠(1명)/10일(2명)/14일(2명)/20일(2명)/70일(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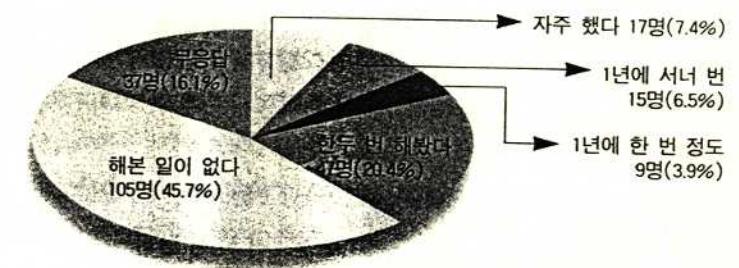
■ 금지이유

정벌(20명)/단식(5명)/조사관계로(4명)/친척이 아니라고/신분확인이 안되어 횟수초과/소내 문제 때문에 싸울 때/소내 폭행사건/교도관의 직권 남용으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학생들이기 때문/면회 때 고문 받은 이야기를 한 후로/사건을 부인하므로 검사가 금치시킴

17. 면회 금지를 당했다고 대답한 분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 등에 불복신청을 해보았습니까?



18. 당신은 특별면회(면회실 외 장소에서 칸막이 없이 면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19. 특별면회를 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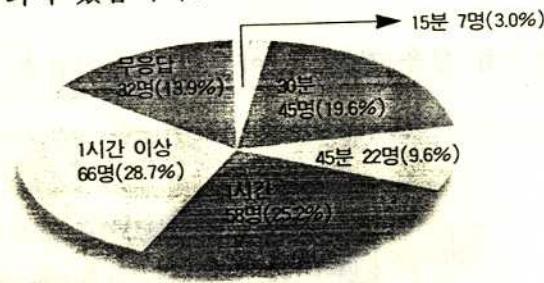


■ 기타—정치수에 대한 특별대우(6명)/교무과의 교화정책의 하나로 이용할 경우(5명)/부모님과 한두 번(4명)/가족(3명)/수사접견(2명)/합동접견 때(2명)/투쟁으로 생취(2명)/장기수라는 이유로/전향 공작을 위해/교도소와 약속한 내용에 따라 가족은 늘 특별면회했다/공안수에 대한 순회 면회라는 제도의 일환으로/재소자의 요청에 의해서/교수/형 확정되어 이감 가기 전에 보안과에 부탁하여/가족에 한해 순회접견의 명목으로 두 달에 1번 정도 허락되었다/부친상 때/교도소의 관례 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20. 특수신분의 면회객과 특별면회를 했다면 그 면회객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수 등 학교직원(21명)/가족(20명)/종교인(11명)/변호사(7명)/형사(5명)/정치인(3명)/교화위원(2명)/공무원(2명)/자매결연(2명)/권력가(2명)/단체장(2명)/한국주택공사총재/KBS직원/중앙정보부 수사관/사회단체

21. 면회 온 당신의 가족은 보통 면회신청을 해놓고 얼마나 기다려야 했습니까?



22. 면회에 대하여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은?

- 면회시설과 인원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13명)
- 면회시간을 확대하거나 시간제한을 없애야 한다(41명)
-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12명)
-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회가 가능해야 한다(12명)
- 차폐시설 철폐(11명)
- 특별면회의 확대실시(7명)
- 공휴일 면회가 가능해야 한다(3명)
- 접견 횟수의 제한을 없애거나 늘려야(6명)
- 면회객 수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5명)

■ 접견 내용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사생활의 보장)(3명)

■ 접견 내용 기록이 없어야 한다(3명)

■ 기타

제한이 너무 많다/면회 내용이 사동에 펴진다/사람을 보고 말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가족이 자주 보지 못해서 별로 할말이 없다/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가족이 죄인인가?/수용자가 유력인사이면 차별대우한다/규정대로 준수되길/절차가 복잡하다/형식적이다/민생치안법의 공모자 아닌 자는 사건을 사실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하게 특별한 수감자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수감자의 경우 면회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면회 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군산 교도소 당국은 공안수의 접견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규정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접견을 제한하고 가족 외 친구들이 접견할 때 거부하거나 2~3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였다/제약이 많다/더 부드럽고 신축적인 분위기에서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일반수 면회는 상당히 푸대접한다/폐쇄적이고 원시적이다

제14장 편지

1. 편지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써야 했습니까?

① 그렇다 (장소 및 시간)	44명	19.1%
② 정해진 곳에서 써야 했지만(장소:) 일과 시간이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다	27명	11.7%
③ 장소도 시간도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상 묶인되어, 일과시간 외에 감방에서도 썼다	105명	45.7%
④ 무응답	54명	23.5%

■ ①의 경우—담당교도관이 보는 가운데 1시간 정도(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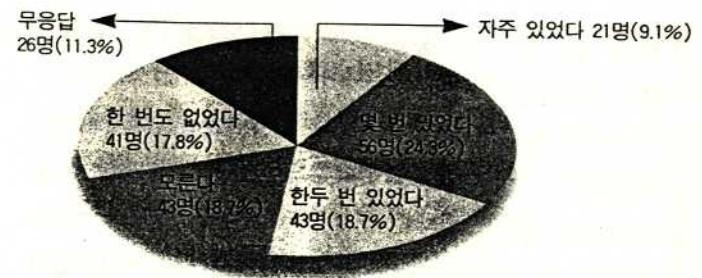
■ ②의 경우—사방(18명)/집필실(5명)/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복도(2명)/사동담당실/공장/취업장/휴식시간/소제방/거실/개방시간 내

2.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대가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었습니까?

① 가족에 한정	9명	3.9%
② 가족과 친척에 한정	9명	3.9%
③ 가족, 친척 및 신분이 확인된 친지에 한정	20명	8.7%
④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었다	135명	58.7%
⑤ 기타 제한이 있었다	33명	14.3%
⑥ 무응답	24명	10.4%

■ 기타—타교도소 출감자 또는 수감자(9명)/단체에는 편지를 쓰지 못함(9명)/한 통은 가족에게 나머지 한 통은 자유(2명)/목시적 제한/교도소의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군인에게

3. 당신이 쓴 편지를 교도(구치)소 당국이 불허한 일이 있습니까?



4.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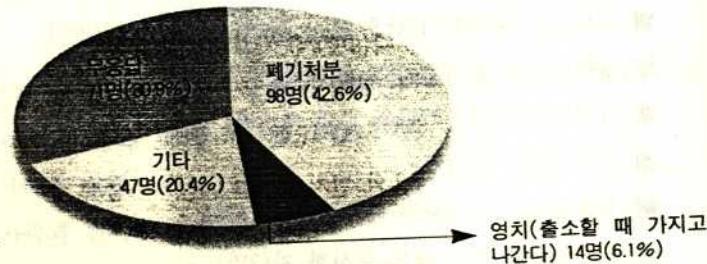
- 교도소 내부 실태 등에 관한 편지(47명)
- 정치적 견해(23명)
- 교도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상적인 내용일 때(12명)
- 불특정다수 앞으로 보낼 때(6명)
- 사회단체나 언론기관에 보낼 때(6명)
- 단식한다는 말(4명)
- 청원집필을 불허하는 내용의 편지(3명)
- 민가협회원 또는 그와 유사한 자(3명)
- 기타
타교도소로 보낼 때(2명)/통·장수의 제한(2명)/사건 내용(2명)/학교 이야기(2명)/출소자의 편지(2명)/취급부주의로 도중 증발(2명)/내가 예전에 쓴 기사가 소내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읽은 기독교 교화위원이 격려 편지를 준 적이 있어서 답장을 했는데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 교화위원에게 썼다는 이유로 불허된 적이 있다/교정상의 이유/보복, 권력남용, 안기부 지령, 법무부 지시/외국인 후원인에 대한 답장/최후진술의 내용/수신자 미상시/가족/출소자에게 보

낼 때/가족 외 발신자/수배자/소지들이 읽는 것을 보았다/특히 출원
등의 문제. 당국이 귀찮기 때문이다

5. 당신이 쓴 편지가 불허되면 교도(구치)소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줄니까?

① 정식으로 알려준다	44명	19.1%
② 비공식으로 알려준다	21명	9.1%
③ 알려주지 않는다	53명	23.0%
④ 비공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42명	18.3%
⑤ 무응답	70명	30.4%

6. 당신이 쓴 편지가 불허되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7. 당신이 쓴 편지를 교도(구치)소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내보낸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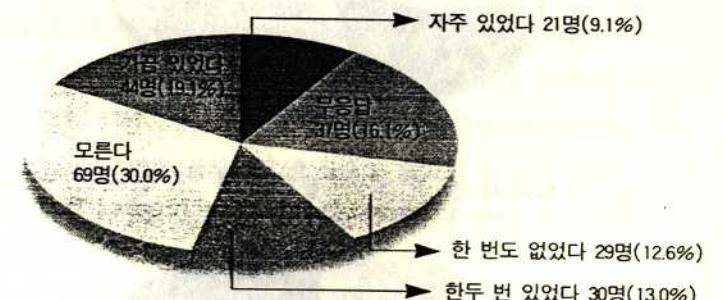
① 자주 있었다	24명	10.4%
② 몇 번 있었다	33명	14.3%
③ 한두 번 있었다	15명	6.5%
④ 한 번도 없었다	20명	8.7%
⑤ 모른다	93명	40.4%

⑥ 무응답 45명 19.6%

8.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

소내생활(소내 인권 상황이나 소내 상황)(24명)/시국이나 정치적 내용(24명)/단식한다는 말(3명)/공범 이름 등 사건 관련(4명)/불온적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3명)/특정 단어 사용금지(학생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투쟁이라는 단어 등)(2명)/숫자 또는 암호라고 판단되는 내용(2명)/함께 살고 나간 동료가 보낸 것/박노해의 시/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달라는 부탁 부분/사회과학서적 책명/책 부탁/전화번호 등 외부연락시/바깥 소식을 정리해 보내달라고 해서

9.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교도(구치)소 당국이 불허한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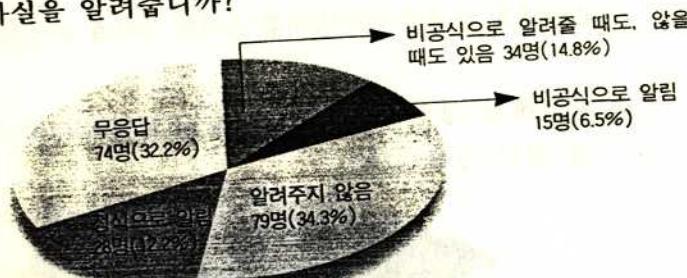


10.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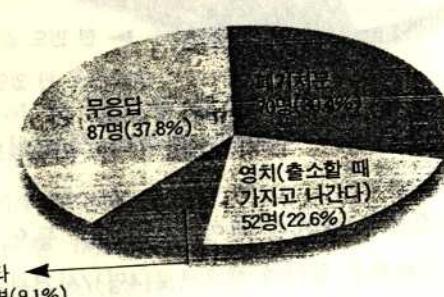
정치적 내용(정치적 의견의 차이, 사면내용 등으로 임의적 불허)(19명)/소내 생활을 알리려 했으므로(4명)/사건관련(사건관련자로 해석되어지는 사람)(4명)/관리소홀(소지, 교도관)(4명)/외국이나 국내 인권단체에서 오는 경우(4명)/교정상의 이유(교회에 부적당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들)(3명)/유명인사 혹은 반체제인

사라고 하여(2명)/박노해 씨의 시 계재(2명)/투쟁을 자극하므로(2명)/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경우/본인의 이야기/편지의 양이 너무 많아서/소내 생활이 도움이 안되므로/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서/규격이 컸을 경우/다른 곳 재소자와의 교통불허/심적으로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서(친구 결혼사진 문제)/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소포 속의 편지에 교무과 검인이 없으므로 영치되었다/문건, 한총련 관련 내용 인권지기 소식지, 후원회 소식지 등

11.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교도(구치)소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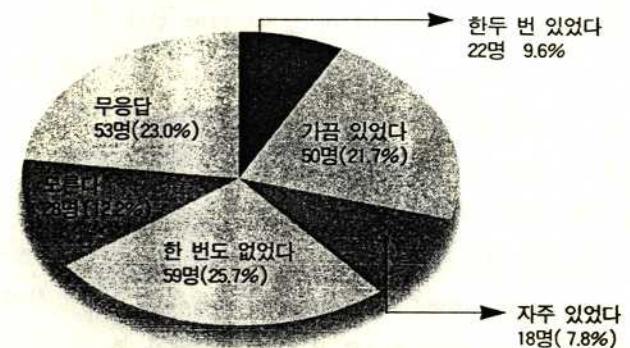


12.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 기타—모른다(8명)/반송(3명)/폐기처분 되는 것도 있고 영치되는 것도 있다(2명)/알려주고 폐기처분 된다.

13.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교도(구치)소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준 일이 있습니까?



14.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

정치적 내용(양심수 이야기, 한총련 이야기, 신념이나 사상에 관한 이야기)(30명)/잘 모름(8명)/소내 생활에 관한 이야기(9명)/밖에서의 투쟁소식(4명)/단식이야기(3명)/공범 등 사건 관련(4명)/특정인의 이름(정치인의 이름)(2명)/사회에 민감한 이야기(2명)/행형법상의 처우와 양심수 처우 현실/불허도서/출소자의 편지나 타소재지에서 온 편지/검열철폐/투쟁과 같은 단어/학내소식/박노해 씨의 시 등/숫자

15.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발송기간-배달기간)

7일—7일(41명)/5—5(25명)/7—10(13명)/7—5(11명)/5—7(8명)/10—10(7명)/3—3(7명)/7—4(6명)/5—3(6명)/4—4(6명)/5—4(6명)/7—3(5명)/6—4(3명)/4—5(3명)/6—6(2명)/4—3(2명)/15—7(2명)/6—5(2명)/7—2(2명)/2—4(1명)/20—7(1명)/15—15(1명)/14—14(1명)/3—7(1명)/2—3(1명)/20—10(1명)/10—15(1명)/3—5(1명)/20—15(1명)/15—15(1명)/7—15(1명)/4—5(1명)/10—5(1명)/5—2(1명)/10—7(1명)/5—15(1명)/4—6(1명)/10—11(1명)/7—5(1명)/6—7(1명)

16. 편지 문제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검열철폐(33명)

미결수인 경우 서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형식적인 편지 검열을 없애고, 일일이 기록하게 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으로 신속한 의견소통이 어렵다/사상을 제한한다/하고 싶은 말을 제한한다

■ 통수, 장수, 횟수 제한 폐지(3장 이하만 허용)(25명)

■ 신속 정확한 교부와 반출(19명)

월요일엔 편지를 주지 않아 화요일에 편지를 받는다/편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필요하다/교무과에서 시간경과 문제로 특히 서류 기한을 넘겨 심사 청구를 못해 많은 손해를 봄

■ 지나친 검열(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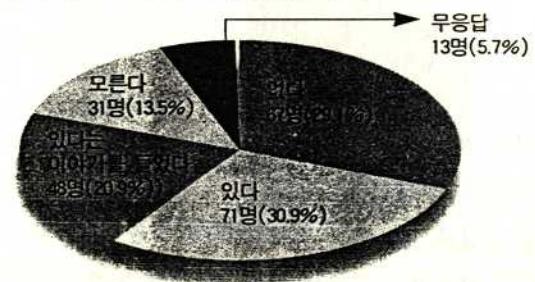
■ 편지불허의 원칙이 불명확하며 불허가 남용되어짐(6명)

■ 기타

분실(3명)/불허시 정식 통보 없다(3명)/영치제도 폐지(2명)/좋다(2명)/타교도소와의 편지왕래 불허(수감중인 부부간의 편지왕래가 허용되어야)(2명)/우표신청시 잊은 행정착오(2명)/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직접 신청하여 재소자가 받도록 해야 한다/대전 교도소에서는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없다/내용제한이 엄격하다/진술의 내용, 안에서의 처우 등의 문제도 허락되어야 한다/글로 표현하기 부족하다/별다른 제한은 없었으나 가끔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 편지제도는 표현의 자유임/좀더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범죄행위를 모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서신 보장한다

제15장 도서·신문 열독 등

1. 당신이 있던 교도(구치)소에는 오락, 교양 및 전문 도서가 구비된 도서실이 있었습니까?



2. 도서실이 있다면 소장된 책의 권수와 종류의 다양성은 만족스럽습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5명	2.2%
② 지적 욕구는 대체로 충족된다	9명	3.9%
③ 불만족스럽다	29명	12.6%
④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29명	12.6%
⑤ 어떤 책들이 몇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82명	35.7%
⑥ 무응답	76명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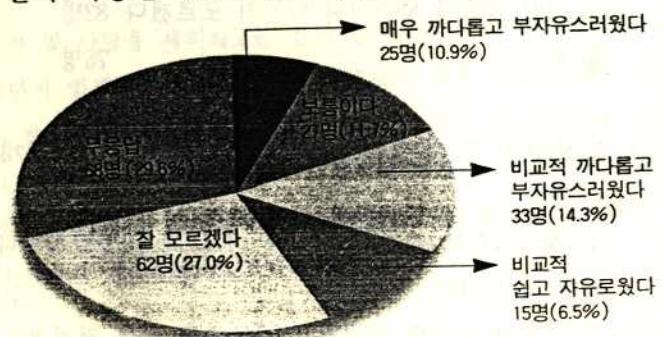
3. 도서실이 있다면 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직접 도서실에 가서 책을 열람하거나 빌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19명	8.3%
② 사동과 공장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보고 정기적으로 책을 신청하면 갖다주게 되어 있다	50명	21.7%
③ 교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사동과 공장마다 책을 갖다주면 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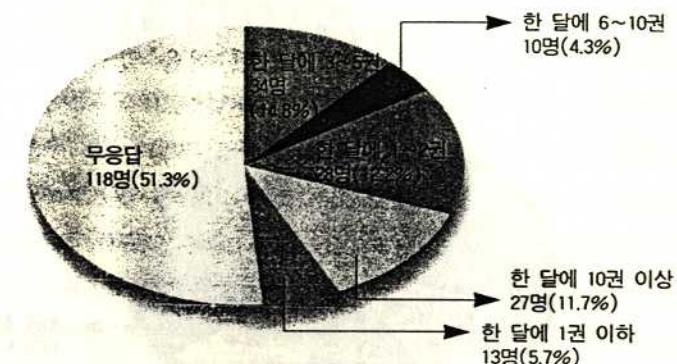
에서 골라 보게 되어 있다	12명	5.2%
④ 담당 교도관에게 부탁하면 교도관이 교무과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다	8명	3.5%
⑤ 정확한 이용방법은 모른다	57명	24.8%
⑥ 기타	18명	7.8%
⑦ 무응답	66명	28.7%

■ 기타—구비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제도는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실 행된 것은 보지 못했다(3명)/필요시 가서 빌려 볼 수 있었다(2명)/이 용해 보지 않았다/교무과에 찾아가 직접 책을 골라 볼 수 있었다/책 을 이용하기 힘들었고 집에서 넣어 준 책만 읽었다/재소자 중 1인이 나가 골라오다가 나중엔 사동 소지가 가져다 주었다/도서목록을 2주 일에 한 번 주었다/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교 도관의 계호를 받아서 빌려 볼 수 있었다/교무과에 갔을 때 빌린다/ 이용할 수 없었다/2~3명이 책을 무작위로 넣어 준다/형식적이다/이 용할 만한 책이 없다

4. 도서실의 이용은 쉽고 자유로웠습니까?



5.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관책을 빌려본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빌려볼 수 있습니까?



6. 당신이 미결수로 있던 구치소는 당신의 소송에 도움이 되는 최신의 법률서적이나 법전을 비치해 두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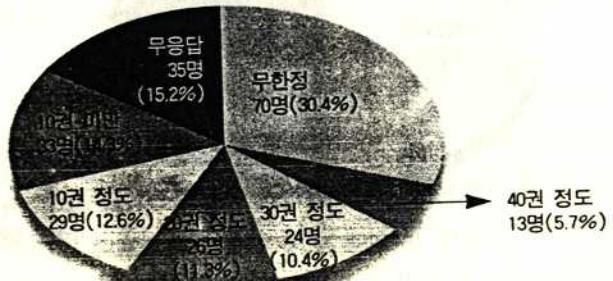
- ① 수감자용으로는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68명 29.6%
- ② 비치되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책이 부족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9명 3.9%
- ③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43명 18.7%
- ④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 90명 39.1%
- ⑤ 무응답 20명 8.7%

7.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구치)소는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재소자용으로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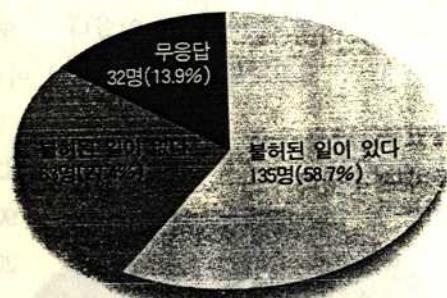
- ① 비치되어 있었으며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 8명 3.5%
- ② 비치되어 있었지만 열람하기가 어려웠다 14명 6.1%
- ③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147명 63.9%

④ 행형법이 뭔지 모른다	42명	18.3%
⑤ 무응답	19명	8.3%

8. 당신의 감방에서 외부에서 차입된 책을 몇권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9. 외부에서 차입된 책이 불허된 일이 있습니까?



10. 불허된 일이 있다면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만이 희망이다(36명)/교내 소식지(동연회지, 학보, 신문)(5명)/월 월이들의 합창(5명)/다시 쓰는 한국현대사(4명)/만화책(4명)/시사지 (한겨레 21, 말지 등)(4명)/완전한 만남(4명)/레닌 관련 서적(레닌의

희상, 레닌 저작선, 레닌)(3명)/마르크스와 관련된 책(3명)/미등록 도서, 잡지(3명)/박노해 시집(노동의 새벽, 참된 시작)(3명)/보안관찰자의 꿈(3명)/자본론(3명)/제야단체 발행지(자주의 길, 전국연합 기관지)(3명)/감옥으로부터의 사색(2명)/무협지(2명)/사회과학서적(2명)/야한 잡지나 소설(2명)/전환시대의 논리(2명)/제국주의와 한국사회(2명)/조국 상, 하(2명)/조국은 하나다(2명)/철학산책(2명)/철학에세이(2명)/20세기를 움직인 사람들/가고 또 가고/가정의학대전/경제사 강의/경제사 학습/경제학의 기초이론/국가보안법연구/긁어야 할 것이다/그림시의 옥중수고 2/김영하의 소설집 호출/나의 주장 사상의 자유/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등/네모네모 로직/녹슬은 해방구/로자 루센부르크/무엇을 할 것인가/밤과 낮이 없는 대지/백척간두에 서서/북한자료/사람이 살고 있었네/사이공의 흰옷/사회단체 기관지/세계 철학사/섹스북/시사성이 농후한 책/은행나무 사랑/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아담이 눈뜰 때/야인/어머니/어머니 하나님 조국에서 살고 싶어요/여자 나체 그림/영국혁명 및 평가와 전망/우리 시대의 인생관/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일하며 배우는 경제학/자주화의 길/정세연구/정치경제학 개론/정치경제학 원론/제국주의론/조국 광복회 운동사/조국통일운동론/종파주의 연구/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주체철학/중국의 붉은 별/처칠의 회고록/철학사전/청춘송가/쿠바혁명사/태백산맥/트로츠키/폭풍 속의 역사/행형 관련 서적, 문건(2명)/작가의 신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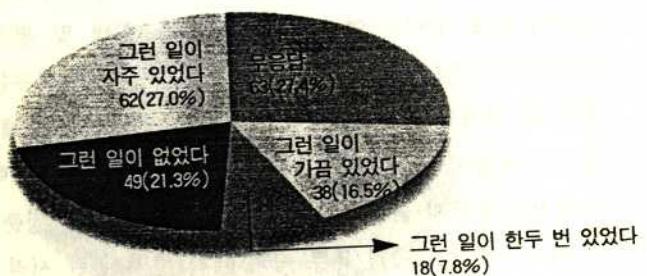
11. 당신의 책이 불허된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복수응답)

① 음란·외설	29명	6.71%
② 폭력	8명	1.85%
③ 범죄수법의 노골적인 묘사(추리소설 등)	19명	4.40%

④ 교도소 내막에 관한 내용	44명	10.18%
⑤ 교도소 행정이나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	34명	7.87%
⑥ 이적성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132명	30.55%
⑦ 시사성	37명	8.56%
⑧ 교화상 이유	36명	8.33%
⑨ 기타	16명	3.70%
⑩ 무응답	77명	17.82%

■ 기타—수감자(박노해)가 쓴 책(5명)/이유를 모름(2명)/만화책(2명)/교도관의 자의적 판단/같은 조직원의 책이라는 이유/전향 내용/교도소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비등록 간행물/사상서적/불허 목록에 있다는 이유—전주교도소

12. 차입된 잡지 내용이 삭제되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13. 잡지 내용이 삭제된 일이 있다면 그 잡지 이름과 기사 이름은?

■ 잡지명—월간 말(49명)/한겨레21(38명)/시사저널(4명)/한겨레신문(4명)/잡지구독 불허(국방일보만 가능, 신문열람도 금지)(3명)/주간 일신문

■ 기사명—구치소, 교도소 관련 기사(소내 생활이나 교도관 비리, 교도소 당국 비판 기사, 구치소 인권기사 등)(30명)/양심수 관련 기사(11명)/한총련 관련 기사(한총련, 학생운동, 한총련 의장 인터뷰)(7명)/박노해 씨 기사(6명)/신창원 기사와 교도소 탈주 기사(5명)/기억이 안 남(5명)/외설의 요지가 있는 내용(외설 기사와 누드사진, 포르노에 관한 내용)(4명)/정치적 내용(투쟁 내용의 광고란, 김영삼에 관한 내용 등)(3명)/사건 관련(3명)/시사성이 있는 기사(2명)/현 수감자의 글이나 기사(2명)/별책부록이 들어오지 않음/김일성 주석 연두교서/징벌에 관련한 사설/프랑스 신문에 난 본인의 기사/한반도 정세전망에 관련된 새농민의 기사/신문 기사 삭제/출소자의 관련기사/단편소설에서의 15평 이야기/자신의 글은 불허/철거민 집회 소식/사회단체 소식/본인 관련 기사/잘 모르겠음/많음/월간지 대부분

14. 법무부에서 각 수용시설에 내려보내는 금서목록이 있다 는 사실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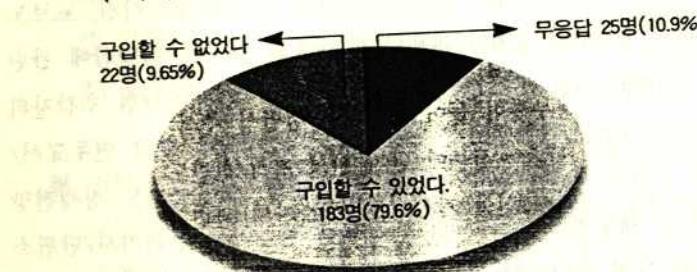
- | | | |
|-------------------------|------|-------|
| ① 금서목록을 직접 본 일이 있다 | 23명 | 10.0% |
| ② 그런 금서목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121명 | 52.6% |
| ③ 그런 금서목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6명 | 2.6% |
| ④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 65명 | 28.3% |
| ⑤ 무응답 | 15명 | 6.5% |

15. 소내에서 수감자들이 서로 책을 빌려 볼 수 있습니까?

- | | | |
|--------------------------------|------|-------|
| ① 원래 규칙위반이지만 매우 자유롭게 빌려 볼 수 있다 | 38명 | 16.5% |
| ② 원래 규칙위반이지만 요령껏 빌려 볼 수 있다 | 149명 | 64.8% |
| ③ 빌려 보기 어렵다 | 13명 | 5.7% |

④ 빌려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9명	8.3%
⑤ 무응답	11명	4.8%

16. 영치금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한달에 몇번이나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 한 달에 몇 번—1번(41명)/2번(38명)/3번(7명)/4번(34명)/무한정(4명)

17. 도서 열독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 구입할 수 있는 책의 제한(8명)

책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구입하지 못하여 볼 수 없는 책들이 있었다/교도소 측이 구입을 못하는 것인지 구입을 회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업무를 핑계로 잘 구입해 주지 않는다/구입이 까다롭다/외부 책 구입이 불가능하다/1회 책 구입량이 3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 금서목록, 검열 철폐(8명)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성적인 자극을 주는 책 이외에는 금서를 풀어야 한다/공안수에게 적용되는 금서목록을 없애야 한다/외부에서 책 차입시 검열이 심하다.

■ 독서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9명)

책만이라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도서 배치(7명)

읽을 만한 책이 필요/도서 비치량 증폭/차입도서 외에는 폭력, 외설 도서만 볼 수 있었다/면회를 통해 차입한 책만 보기 쉽다

■ 기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았다(5명)/타재소자와의 책 교환이 허락되어야(4명)/검열 철폐(외부 차입시 검열이 심함)(4명)/관책의 대출이 부자유스러움(3명)/도서관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형식적인 도서관)(3명)/책이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왔으면 한다(소내 서점이 없어 책 구매에 1달 이상이 걸림)(3명)/전문서적이 없음(법률 도서 구비)(2명)/수용상황의 열악으로 독서가 불가능하다(2명)/자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2명)/자의적인 책 제한이 있다(2명)/사책 구입 횟수가 많아져야 한다/1년 전부터 책을 비치하고 있으나 자비로 책을 사 보는 경우가 많다/도서관 이용에 활성화가 필요하다/없다/(도서 구입 대출에 관한) 좀더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별도의 도서실을 본 적이 없다/독서열람시간이 출역수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교화에 도움이 되는 책만 있었으면 좋겠다/교도관에 의한 자의적 제한 철폐가 필요하다/사전 케이스는 폐기처분하므로 사전이 쉽게 파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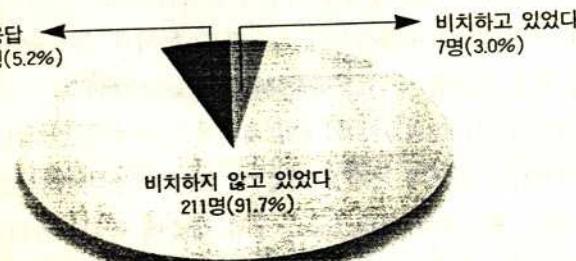
18. 출소 직전에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구독했다면 어떤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 | 선택 | 인원 수 | 비율 (%) |
|----------------------|------|--------|
| ① 구독했다(신문 이름:) | 180명 | 78.3% |
| ② 구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 21명 | 9.1% |
| ③ 구독이 허가되지 않았다(이유:) | 10명 | 4.3% |
| ④ 무응답 | 19명 |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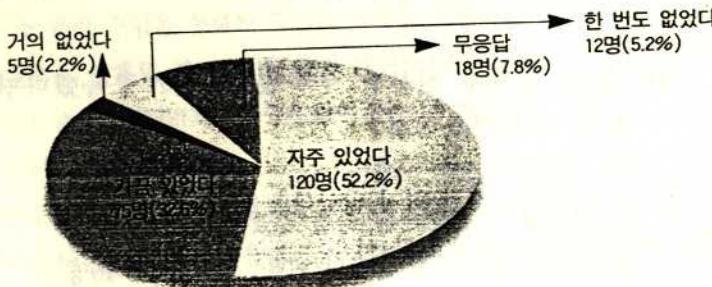
- 구독신문—한겨례(125명)/조선일보(19명)/동아일보(19명)/중앙일보

(18명)/스포츠서울(5명)/일간스포츠(4명)/스포츠조선(3명)/매일경제
신문(3명)/문화(3명)/서울(3명)/경향(2명)/코리아해럴드/이코노미스
트/코리아 타임즈/전남일보/제민일보/국민일보
■ 구독 불가 이유—누진급수가 2급 이상이 안되어 신문구독을 할 수 없
었다

19.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구치)소는 구독할 돈이 없는 수감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20. 신문을 구독했다면 그 신문의 일부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된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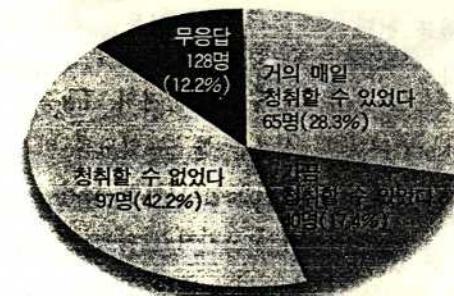


21. 어떤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되었습니까?(복수응답)

① 교도소 내의 비리사건	10명	4.3%
② 시국 관련 기사	17명	7.4%
③ 수감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기사	8명	3.5%
④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	2명	0.9%
⑤ 기타	6명	2.6%
⑥ 어떤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	18명	7.8%
⑦ 무응답	32명	13.9%

■ 기타—탈옥수 신창원 기사(22명)/한겨레 광고란 삭제(7명)/관할 지역
내 형사사건/석방을 요구하는 글/구치소 내 재소자 사망 사건/해외
교도소 폭동사건 기사

22. (부분적으로 삭제된 것이라도)방송 뉴스를 청취할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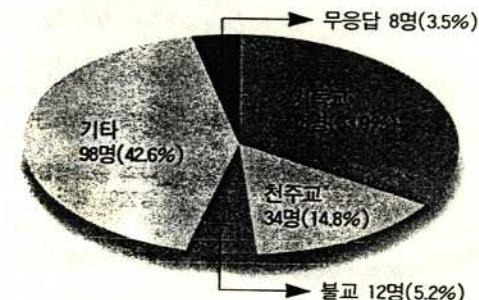


23. 그밖에 신문 구독과 라디오 뉴스 청취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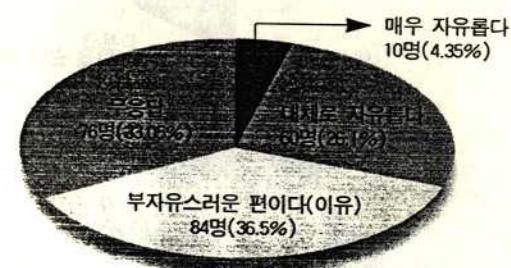
- 검열 철폐(23명)
- 자유로운 언론 접촉의 보장(8명)
 -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구독과 청취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바깥 소식을 알 길이 없다
- 기타
 - 생방송으로 뉴스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9명)/신문 구독 불가(8명)/뉴스 청취 금지(8명)/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해야 한다(3명)/영어회화 등 상식을 위한 것까지 청취 가능해야 한다(2명)/본인의 내용과 상관된 것도 허락해야 한다(2명)/소리가 작다(2명)/검열과 삭제가 심하고 라디오는 지난 방송을 틀어준다(신문을 삭제하거나 TV뉴스를 틀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음날 아니 그날이라도 알 수가 있기에 굳이 내용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2명)/신문 기사 삭제는 부적당하다/신문을 너무 많이 잘라서 아예 신문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신문구독시 여분이 필요하다/중간 구독이 가능해야 한다/라디오 청취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신문을 하루 중 오후 늦게 주는 점이 나쁘다/언론탄압이 심하다/구독 신문지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신문구독이 불가능한 사람도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말의 자유 제한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신청 시기나 받아보기 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귀찮아서 포기하기 쉬웠다/모두 개방해야한다/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대체로 좋다/교도관 비리사건 등을 청취할 수 있기 바란다/교도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야 한다/신창원 탈옥 등의 이야기를 왜 안해 주는지 모르겠다/다 아는 사실인데 숨기는 이유를 모르겠다/시나간 방송은 재미가 없다

제16장 종교

1.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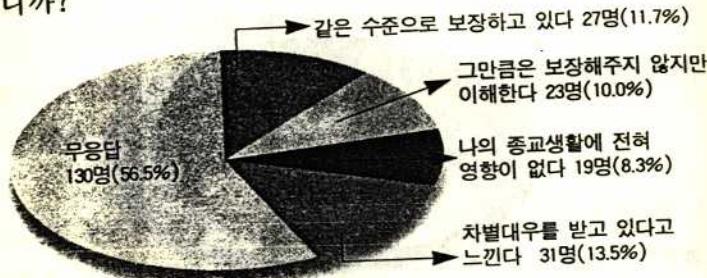


2.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 교도(구치)소에서의 종교생활이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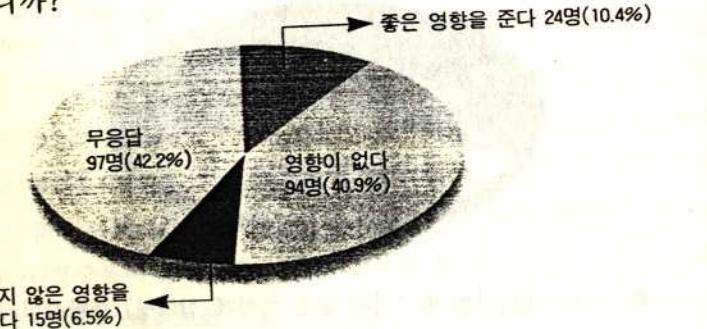


- 이유—공안사범 종교집회 참석 못하게 함(7명)/보안상이라는 이유로 통제가 심함(6명)/미결수는 사실상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3명)/예배시간이 없다(3명)/일주일에 한 번 있는 집회에 가지 못하게 제한한다(2명)/종교집회 장소의 수용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2명)/각 종교간의 차이가 있다(1명)/면회시간 이외에는 무조건 통제되며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서 개인 종교시간을 갖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1명)/2주의 1회 종교집회가 있다(1명)/종교방이 없어 찬송가 등을 부르는 사람들의 경우 비신도와의 마찰이 있다(1명)

3. 당신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외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도(구치)소 당국은 당신의 종교생활도 3대 종교의 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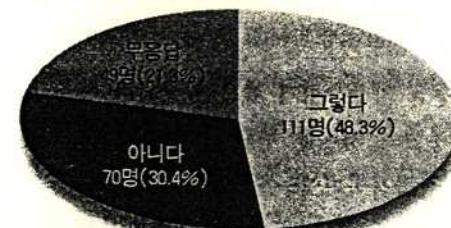


4.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교도(구치)소 당국에 의한 종교활동의 보장과 권장이 당신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 영향—교도관 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이들에 의한 선교가 많으며 특정 종교가 장려된다(2명)/재소자들을 강제하거나 재소자 사이의 갈등 조장(1명)/기독인들의 교회를 벨미로 한 번거로움(1명)/일방적이고 형식적(1명)/자유를 막는다(1명)/종교는 재소자들의 마음은 안정시킴과 동시에 평안함과 성과 희망을 얻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1명)/믿음을 갖게 한다(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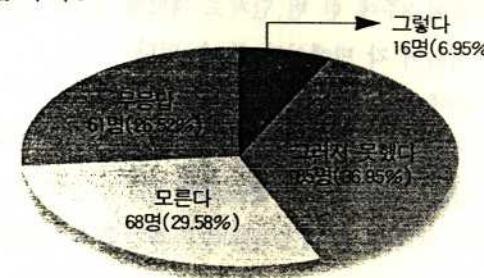
5. 종교방이 있었습니까?



6. 당신이 있던 교도(구치)소에는 수감자로서 한 종교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신자 대표가 있었습니까?



7. 만약에 신자 대표인 수감자가 있었다면 그는 자유롭게 다른 수감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8. 그밖에 종교생활에 대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10명)

성가대 및 교리반 활동을 자유스럽게 했으면/출입의 자유가 통제되므로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자유스런 분위기가 필요하다/일방적이고 형식적이다.

■ 특정종교의 강요와 차별(9명)

특히 기독교를 강요한다./허용되어야 한다/불교, 기독교, 천주교만을 인정한다/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준다/다양한 종교행사가 가능해야 한다/종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특정종교만 강제하다/종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특정종교만 강제하는 경향이 많다

■ 미결수의 종교활동 보장(8명)

■ 공안수의 종교활동 보장(6명)

반성문을 써야 종교활동을 허가한다고 강요했다/공안수 종교집회 참가 불허한다

■ 종교집회의 금지·제한(5명)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종교활동이 보장돼야 한다/종교집회를 불허하였다/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참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치소의 경우 종교활동이 전혀 없다/왜 일요일에 예배도 못 보게 하느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집회를 너무 빨리 끝낸다/의정부 교도소에서는 외역수들이 3주에 한 번 단체로 예배를 볼 수 있었지만 97년 11월부터는 불허되어 각 방에서만 할 수 있다

■ 종교집회장 안에 교도관이 들어오지 말아야(2명)

교도관들이 종교관에서까지 욕하고 큰소리를 치는 것은 꼴불견이다. 힘이 없어 참을 뿐이다/부디 종교관에서는 약간의 소란이 있더라도 참아주었으면 한다/물론 재소자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조금 소란한 건 사실이다

■ 기타

신자 대표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야 한다(4명)/종교방·종교사동이 없다(2명)/개선할 것들이 많다(1명)/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다(1명)/종교생활이 안과 출소 후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범죄가 재발된다(1명)/신부나 목사·스님과의 대화 유도가 바람직하다(1명)/사회 종교단체가 재소자를 위해 많은 힘을 썼으면 한다(1명)/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한다(1명)/본인은 특별히 종교활동을 금지당했다(1명)/종교생활이 수양생활이 아닌 광신자로 만든다(1명)/교도소 당국에서 좀 더 많은 재소자들을 종교단체와 자매로 맺어주길 바란다(1명)/천주교가 엉뚱한 교정사업을 하는 것 같다(1명)